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자료

주 최 :  교육부

주 관 :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자료

주 최:  교육부

주 관: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I . 「학생 성폭력 대응과 학생 지도관리」 직무연수	
1.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	6
Part 1. ‘과 생활’을 하는 여자 대학생의 생존기	6
– 김 민 경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Part 2. 학생 단체가 겪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8
– 두 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 대학 사이버 성폭력 대응 전략	13
– 김 영 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3. 대학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징계의 쟁점 : 학생사례를 중심으로	37
– 노 정 민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사)	
II . 「대학 성폭력 피해 위기개입과 상담지원」 직무연수	
1.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착안점	52
– 강 주 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센터(상담) 전임상담원)	
2. 피해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전략	58
– 이 형 주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사)	
3. 피해내담자와 치유회복 상담 유의점	72
– 고 경 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학생상담센터 객원연구원)	
III . 「대학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워크숍	
1.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87
– 김 진 희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책임연구원·책임상담원)	
2. 사건의 2차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97
– 김 예 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I.

「학생 성폭력 대응과 학생 지도관리」 직무연수

일시 : 2019년 8월 23일(금) 10:00 ~ 17:00

장소 :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 310호 대강의실

일 정 표

시간(분)	주요 내용
10:00~10:20(20)	등록
10:20~10:30(10)	직무연수 과정 소개
10:30~12:00(90)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 Part 1. '과 생활'을 하는 여자 대학생의 생존기 - 김 민 경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Part 2. 학생 단체가 겪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두 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00~13:00(60)	중식
13:00~14:30(90)	대학 사이버 성폭력 대응 전략 - 김 영 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14:30~14:50(20)	Tea Break
14:50~16:20(90)	대학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징계의 쟁점 : 학생사례를 중심으로 - 노 정 민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사)
16:20~17:00(40)	대학 간 네트워킹 및 종합 정리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

김민경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 두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1

Part 1. '과 생활'을 하는 여자 대학생의 생존기

김민경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요즘 많은 대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대학생의 일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대부분 처음에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학생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성폭력을 겪기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회 안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013년 신입생 때부터 과/반¹⁾ 학번대표, 과/반 새터²⁾준비위원장, 과/반 회장, 단과대 새터준비위원, 단과대 회장 등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과 생활'을 하는 여자 대학생들이 겪는 성폭력과 어려움을 전해보려 합니다. 다만 제가 속한 대학교를 벗어나서 활동한 적이 없기에 다른 학교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니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부제 시절의 분반과 학과를 아우르는 학생회 단위를 뜻합니다. 그냥 학과로 이해해도 무리 없습니다.

2) 새내기새로배움터의 줄임말입니다. 신입생 오티를 뜻합니다.

1. '과 생활' 했던 여자 대학생의 대학생활

2013	입학	(1학기 학번대표)
	개인적인 sns대화방 성폭력 피해	(과/반 새터준비위원장)
2014	과/반 소모임 단톡방 성폭력	
2015		(과/반 학생회장)
2016	정경대 단톡방 성폭력 사건	
	사회학과/반 페이스북 비공개그룹 성폭력 사건	
2017	주점 행사에서 성희롱 적발	(단과대 학생회장)

1) 2013년 개인적인 sns대화방 성폭력 피해

당시 저에게는 한 살 많은 남자 연인 A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A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A가 다른 사람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A가 평소에 sns대화방에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만한 상황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아 오면서 '남자들 단톡방은 원래 더럽다', '남자들 단톡방은 판도라의 상자이니 열어보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제가 어리석게 들려오는 '조언'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몰래 봐서 고통을 자초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A도 잘 못했지만 저도 잘못했다고 느꼈습니다.

2) 2014년 과/반 소모임 단톡방 성폭력을 접함

전부 남성으로 구성된 과/반 소모임 단톡방에서 1학년 여자 후배들, 2학년 여자 동기들 이야기가 성적인 맥락으로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 선배가 주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자 학우들 다들 그 선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서서 제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는 싫어할 수만 있고 피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3) 2016년 정경대 단톡방 성폭력 사건

정경대의 단톡방 성폭력이 폭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제까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2016년 사회학과/반 페이스북 비공개그룹 성폭력 사건

사회학과/반 페이스북 비공개그룹에서 2015년 동안 이뤄졌던 성폭력이 폭로되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반 회장, 단과대 회장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을 처음 접하면서 사과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2017년 주점 성희롱 적발

대동제 기간 단과대 회장으로서 각 과/반 주점에 방문하여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과/반 주점에서 어떤 남성이 여자 학우들에게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저는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개요와 함께 성폭력 신고 플랫폼을 공지했습니다.

2.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학생회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선, 성폭력을 인지하기부터 어렵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5)사건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려준 여자 학우도 머뭇거리며 '별 일은 없지만...'하며 털어놓았습니다. 그 학우는 우선 기분도 나쁘고 잘못된 행동인 것도 같지만, 어딘가에 '신고'할만한 일인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임을 인지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원 학생들도 역량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심지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다행히도 대학 입학 전부터 페미니즘, 반성폭력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입학하기도 하고, 과/반에 여성주의 소모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반성폭력에 원래 관심 있는 학우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성주의 소모임이 생긴 과/반도 제가 속한 단과대의 경우 총 15개 중 겨우 절반정도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우들이 제가 겪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폭력인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알려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에서도 새터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고, 고려대학교도 인권교육을 졸업필수조건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대화를 나눠본 많은 학우들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 교육의 내용을 일상적으로 계속 접해야 실제 성폭력 피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대학교 성평등센터와 학생회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소수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학우들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간 대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학생회 지원금을 받을 때 투표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받는 등 백래시를 겪습니다. 학교에 있는 소수의 여성주의자 학생들이 모여 서로 위로를 받고, 각자 여성주의자로서의 활동에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류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문과대성평등위원회는 문과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문페넷)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페넷에서는 각 과/반 여성주의 소모임 회장, 학생회 행사에 참여하여 성폭력에 대처하고 감시하는 성인권보호특별기구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우들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교류공간을 통해 각자 자리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 학우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협력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art 2. 학생 단체가 겪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두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내 다양한 학생 단체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온 두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 단체 시점의 성폭력 사건 진행과 대응,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 문과대학 학생회
-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 소수자인권위원회
- 서울인권영화제

현재는 취업 준비로 인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15년도부터 19년도 초까지 위와 같이 학내외의 다양한 단체들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해를 거치며 크게 느낀 점은 **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할 수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수많은 의견 차이를 만들어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주저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 센터에 대한 불신마저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학생 단체 시점에서 겪는 성폭력 사건 진행과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실제 통계자료가 아닌 개인적 경험에 의존한 기록입니다.

1. 사건을 고발하다

과거에도 학생 단위의 성폭력은 빈번했으나 15년, 16년도부터 학생들 사이의 페미니즘 붐이 일며 적극적인 사건 고발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회에서 직접 마주하는 성폭력 고발은 대체로 아래와 같았습니다.

- 교수 - 학생 간 성폭력 고발
 - : 강단에서의 혐오발언, 직접적인 강제추행 등
- 학생 - 학생 간 성폭력 고발
 - : 개인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과 성희롱, 연인 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학생회 단위의 단체 술자리의 성희롱/혐오발언, 불법 촬영 등

이러한 사건들은 보통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고발되었습니다.

- 대자보
- 학생회 제보

성폭력 처리 담당 센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형태로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의 형태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회 내 성폭력 관련 담당자로 있었을 때, 대자보와 학생회 제보라는 고발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 센터를 믿을 수 없어서
 - : 교수 - 학생 간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 학생회 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
 - : 학생회 단체 A를 믿지 못하는 경우 학생회 단체 B에 제보
- 센터에 혼자 가기 무서워서 동행을 부탁하기 위해
 - : 처음 경험해서 두려워서 / 혼자 가면 부당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 대자보를 쓰면 가해자 처벌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서
 - : 여론을 미리 형성해두지 않으면 사건이 묻히거나 부당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위에 서술된 다양한 '불신'에 대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학생회 관련 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 생각해서
- 해당 단체/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대자보를 읽어서
- 실제로 해당 단체/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어서
- 다른 피해자의 고발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를 보아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저는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성폭력 대응에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피해자가 단체를 믿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믿음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폭력이 없도록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피해자의 옆 사람 되기이기 때문입니다.

2. 사건에 대응하다

위와 같이 저를 포함한 학생 단체 담당자들은 많은 사건 고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발 이후의 대응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대자보 작성
- 학생회 명의로 가해 교수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사과 요구 메일 전송
- 센터 접수 후 센터 내 처리 절차 진행
- 학생회 내 처리 절차 진행(회의 소집 및 징계)
- 포스트잇 운동
- 기자회견

학생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자 할 때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하고자 하지만, 대체로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다른 단체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혹은 따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타 학생회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성폭력 대응 게시물 등을 참고하여 대응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 단위의 대응 방식이 비슷해졌으며, 많은 부분 **학생회 내 회칙과 대자보 작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 단체 내에서의 사건 처리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학생회의 학생 징계(제명, 사과문 작성 등)
- 피해자가 정식 징계 절차를 원하지 않아 고발만 진행하고 끝
-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징계 없이 절차 끝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학생회 내 회칙으로 어디까지 사건처리가 가능한지, 대자보에 관련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가 자주 화두에 올랐습니다. 학생회에서 징계를 내려고 되는 것인지,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징계까지 가능한지, 가해자에게 실명이 담긴 사과문을 요구해도 되는지, 고발 대자보에 가해자의 실명 혹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도 되는지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고려대학교 학생사회 내에서 가장 크게 의견 차이를 빚은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 중 일부입니다.

제4장 절차

제4절 조사 및 결과의 보고

제33조【조사】1 대책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권한을 가진다.

1. 사건 경위.
 2. 사건관계자의 진술.
 3.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증거.
- 2 대책위원회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대책위원회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무고 및 위증

제46조【정의】1 이 세칙에서 “무고”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다.

2 이 세칙에서 “위증”이라 함은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이다.

제47조【징계에 관한 사항】1 무고를 한 자와 위증을 한 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경고.

2.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공개 사과문 게재.
 - 2 제1항에 대한 징계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3 제1항제2호에 대한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절차】1 무고 및 위증에 관한 절차는 제4장의 내용을 준용한다.
- 2 인권침해사건과 무고 및 위증에 대한 신고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동일한 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3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과 동시에 접수된 무고 및 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 4 대책위원회는 위증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무고 관련 조항은 많은 학생 인권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회는 현행법상 경찰과 같은 조사기관이 전혀 아닌데도 회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심지어 무고에 대한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공정한 처사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적 기관이 아니기에 무고가 남용될 위험이 더욱 컸습니다. 실제로 법적 기관에서도 무고죄를 이용하여 일부러 사건 처리를 더디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한 가해자에게 실명 사과문을 요구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고발 대자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역시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회 담당자로서 사건 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서 보낸 명예훼손 관련 내용증명 서류를 받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를 학생회 차원에서 제명하고 이를 공표하는 문제로 학생회 차원에서 변호사 분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생회가 성폭력 사건을 마주함에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권한이 있으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계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3. 사건을 예방하다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만나며 학생사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 학생단체의 설립(위원회, 연석회의 등)
- 회칙 제/개정
- 각종 문화운동(캠페인, 세미나, 강연, 이벤트 등)
- 외부 단체 활동

제가 몸 담았던 문과대 성평등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각각 성폭력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응하고자 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문과대 성평등위원회는 과내의 학생 -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있을 뒤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 학생회장단에게 사건 처리의 책임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단과대 산하 특별기구). 또한 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교수 - 학생 간 인권침해 사건(강단에서의 혐오발언)이 있을 뒤 특정 개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고발을 결심하며 나서야만 사건이 해결되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없도록 범학생회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총학 산하 특별기구).

이외에도 각 단체의 성평등 관련 담당자가 모이는 반성폭력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모임으로부터 시작해 학생 단체들은 반성폭력 규약을 제정하고 캠페인 등의 각종 문화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각 학생회에서 인권침해대응 세칙 등 대응 회칙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관련 회칙을 제작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연사 초청 강연, 생리컵 관련 이벤트, 반성폭력 세미나, 인권 축제 진행 등 문화운동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 진행 등 학생사회 내에서는 다방면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회가 성폭력 처리 절차에 있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회 내 성폭력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두려움으로 번지고 이는 공동체적인 해결에 관한 논의보다 회칙과 절차에 따른 기계적 처리를 선호하고 이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제가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성평등센터 선생님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오픈 강연을 부탁드리고, 위원들끼리 모여 약속을 잡고 선생님을 만나 뵈어 성폭력 사건 및 학생단체의 위치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여쭙는 시간을 갖고, 반성폭력 연석회의체에 초청하여 학생회 대표자들이 성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센터 선생님들과의 일련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 성폭력 처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처리 절차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과 센터와 학생단체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취업 준비로 인해 더는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학생들과 센터 선생님들이 만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욱 생겨난다면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에 몇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학생 단체가 센터 선생님들께 먼저 만나 뵈고 싶다는 메일을 건네기를, 센터 선생님들이 더욱 많은 학생 단체와 마주하는 시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사이버 성폭력 대응 전략

김영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02

「학생 성폭력 대응과 학생지도 관리」 직무연수

대학 사이버 성폭력 대응 전략

김영희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주관 : 교육부 산하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Contents

01

SNS 단체대화방 사건 대응

02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유형	적용법률	예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	·인구밀집 공공장소(지하철 등)에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1~3항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동의없이 촬영한 성적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비동의상태로 유포된 음란한 부호/화상/영상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연인간 이별시, 이별후 다른연인을 만날때, 다른연인과 결혼 후 협박 ·채팅 어플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104조 아동청소년성보호관한법 제17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용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사이버공간내 성적 괴롭힘	형법 명예훼손죄 제307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희롱, 음담패설, 이미지 전송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 모욕발언 함께 게시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Q

어떻게 다른가? 사이버 성폭력 vs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 상 성적 괴롭힘 등을 통칭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

디지털기기로 불법촬영한 영상 등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성적 영상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폭력에도 포함되고 사이버 성폭력에도 포함됨
디지털 기기로 촬영된 많은 영상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포된다는 점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개념임

SNS 단체대화방 성적 언동

☑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적 대상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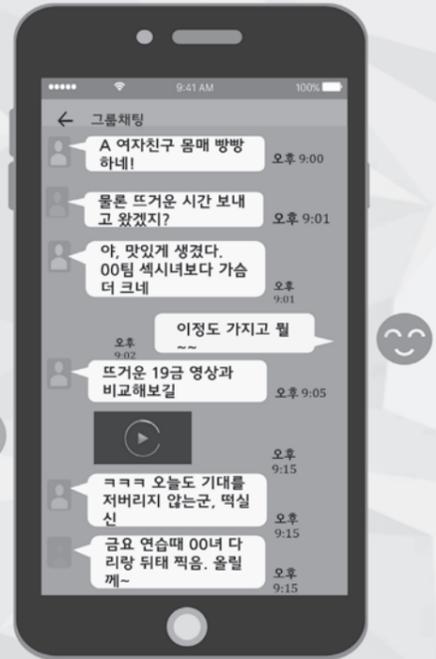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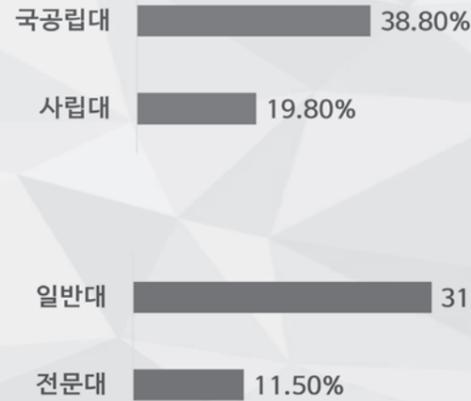
☑ 언제든 공공연하게 다수 전파 가능

☑ 온라인 특성상 피해 특정, 피해 심각

명예훼손죄, 모욕죄
(당사자 없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성적 발언의 공연성 인정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단톡방에 가입한 사람에게 성적 발언과 음란물을 보낸 경우)

최근 대학 내 SNS 단체대화방 성희롱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데 귀 대학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출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2018 교육부 정책연구)



출처	학교	단독방 사건 특성
여성신문 2015.02.16	KM	학교신문 기고, 학과 내 운동동아리 남학생 32명 "가슴은 D컵이지만 얼굴은 별로니 봉지 씌워서 하자", 야동 사이트 / 유흥업소 정보 공유
헤럴드경제 2016.06.14	KR	교과목 수강 남학생 8명 "아 진짜 새따 해야 되는데", 성폭행 가능성 대화, 불법촬영물 공유('영웅')
경향신문 2016.07.11	SO	단과대 남학생 8명 "여자가 고프면 OO(동기여학생)가서 포도 따듯이 툯 툯 따먹어", 불법촬영물 공유
코리아헤럴드 2016.07.12	SO	동아리 남학생 5명 "이쁜이 지금 잔다", "가슴이 크다", "XX(남학생)야 OO(여학생)가 벌리면 할 거냐?", 불법촬영물 공유, 문제제기 동아리원 강제퇴출
경향신문 2016.07.27	KH	동아리 남학생 12명 2015년 10월 발생사건의 가해학생들의 비밀유지서약 미준수, 징계수위 반발 대자보화
여성신문 2016.08.31	SG	단과대 남학생 10여명 "(교내 의자에 잠든 여성 촬영)여자냐", "과방으로 데려가라", "형 참아", "못 참는다"
국민일보 2016.09.03	YS	학과 남학생 30여명 "맞선 여자 첫 만남에 강간해버려", "여자 주문할 게, 배달 좀"
국민일보 2016.11.17	YS	학생회 리더 포함 남학생 11명 "강간하고 싶다, 강간 못하면 XX(동정 은어)를 못 댄다", "여자 가슴도 못 만져본 XX"
경향신문 2017.02.09	HI	단과대 남학생 6명 "시식(성관계 지칭)할 때 물어보고 해", "(여학생들이) '네 오빠' 하면서 옆자리에서 아양 떨면서 술 따르는 게 정답 아님? 진짜 남존여비 부활해야 함"
아시아경제 2017.02.17	GD	단과대 동기 남학생 3명 단독방 성적 모욕감 느낀 동기 여학생이 가해남학생 3명 고소하여 모욕죄로 벌금형 선고받음

출처	학교	단독방 사건 특성
이투데이 2017.03.07	YS	학과 같은 학번 전체 남학생 단독방 OO은 주먹과 주절먹 사이에 있지 않음?", "OO의 진가는 엉덩이", "OO면 108배 하고 먹는다"
한겨레 2017.03.2	DK	학과 남학생 11명 여자들 국이나 끓이지 대학을 오네", 인종차별 발언 "OO(여학생)굴 들어가시겠습니까(Y/N) 구멍도 잘보고 들어가라
헤럴드경제 2017.11.07	CN	동아리 남학생 6명 "OO허벅다리예 청양XX를 비비고 싶다", 랩실에 OO 청바지 입고오는 날 일부러 옆에 가서 비빔 "
MBN뉴스 2017.11.17	HI	학과 소모임 남학생 8명 "(여학생 사진 공유) 여행 중이면 남친과 XX중이겠네", "XX 물리고 싶네"
부산일보 2017.12.03	BK	학과 남학생 4명 (여학생 사진 공유) "먹음직", "성공적", "성형 괴물 같다", "원나잇감으로 괜찮네"
남도일보 2017.12.18	CS	학과 남학생 6명 (불법촬영 후 공유), "재량 침대에 누워서...벽에 밀어 넣고...", '저거 생일 X못생김', '옷 XX 야하게 입네', '불륜 오지네', '얼굴이 망치로 두들긴 것 같다', '중으면서 핑기 오지네'
남도일보 2018.03.13	GH	총학생회 임원 남학생 8명 "학교에서 성관계를 했다", "술 먹이고 XX에~", "스와핑"
이데일리 2018.05.30	KM	단과대 남학생 5명 OO 가슴 보고 싶다", "주부9단 색"
이데일리 2018.05.30	KH, KR, KG, DK, SO, SR	각 학교 남학생 6명 1:1 대화방 및 단독방 (SO대 학생회 제보) 고교동기들에게 여친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여성을 음식에 비유하고,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12.12	UN	대학연합동아리 남학생 동아리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얼평, 몸평) 및 주량으로 '경매'
UPI뉴스 2018.12.17	ST	학과 남학생 17명, '단독방 성희롱' 전력자의 문학상 수상 논란 여자동기3명을 주어로 야설 창작, 불법촬영후 공유, 단독방 나간 남학생에게 2차 가해('반역자')

출처	학교	단독방 사건 특성
한겨레 2019.03.15	SE	학과 남자 재학생과 졸업생 (현직 초등교사 포함) 여학생들 외모품평 자료를 대면식 PPT로 제작
중앙일보 2019.05.09	SE	학과 남자 재학생 및 졸업생 21명 신고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 현직교사가 가르치는 5학년생에 대해 "따로 챙겨 먹어요 이쁜 애는, 아니 챙겨 만나요",
연합뉴스 2019.03.21	KE	학과 같은 학번 남학생, 졸업 후 교사로 재직 중인 동기생 "휴가 때마다 OO(여학생)랑 성관계하면서 군대 한 번 더 vs 대학 내내 성관계 안 하기", "삼일한(한국 여성은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말을 듣는다)"
국민일보 2019.03.24	GB	학과 남학생 20여명 (여학생과 여교수 대상 성적 대상화, 피해자에 대해 단독방서 2차피해) (불법촬영 후 공유) "MT가서 다 같이 XX하고 싶다", "OO(여학생)을 강간하고 싶다"
강원영동 CBS 2019.05.08	GW	총동아리연합회 임원 남학생 3명 (불법촬영 후 공유) "OO(여학생)야 오빠 씻고 왔다", "내가 좋아하는 로리스타일", "OO(여학생)씨의 엉덩이 보고 욕망이 생겼지", "다리가 굵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신을 자격조차 없다. 바지가 터질라 한다"
뉴스1 2019.05.24	DJ	학과 동기 남학생 8명 (여학생과 여교수 대상 성적 대상화) "A(남학생)야 먹었어?, 먹어야지", "(여학생)때리고 인격파탄자로 살아야겠다, 개 남친 있더라, 개x김치x이네", '컬레 XXX', 'XX(생식기 근처)에 침을 놓으라 했다'
연합뉴스 2019.7.27	PU	'단독방 성희롱 퇴학' 남학생 승소...복학 논란 법원은 A씨가 직접 피해 상대방에게 발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준 점, 배움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 등에서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퇴학보다 한단계 낮은 중근신 징계 결정
뉴스엔 2019.08.11	KF	과거 농촌교육봉사활동 단독방 성희롱 가해학생→사과문 게재 논란 "대학 단독방 성희롱 가해자의 '쇼미더머니' 참가를 규탄합니다"

내가 단독방 사건의 당사자, 주변인 이라면 어떤 생각, 심경일까요?



내가 피해자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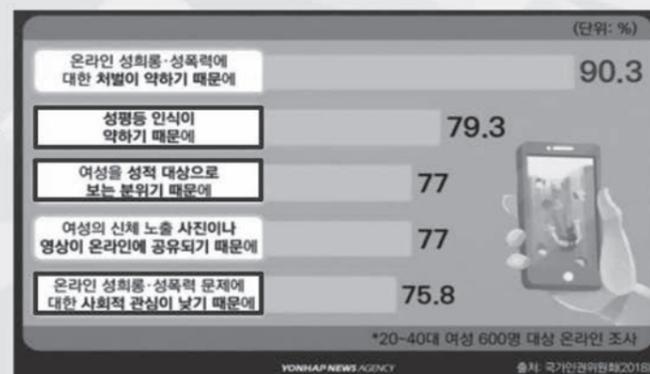
- 심리적 안정 도모 (신뢰관계자, 학교상담기구)
- 관련 증거(피해 증거, 주변 정황 근거 등) 확보
- 사건처리 정보 안내받아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 선택

내가 주변인 이라면?

- 피해자 공감 등 정서적 지지
- 사건 관련(내용, 신원 등)비밀유지 준수
- 2차피해(가해행위자 두둔, 피해자 험담·비난, 주변 전달)금지
- 피해자 의사 존중(사건관련 대화, 처리방식 상의결정 등)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예방이 가능할까?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1. ‘성적 언동에 대한 문제인식 훈련(결속/유대/놀이X)’ 필요!!
2. ‘방관도 가해’ 라는 생각으로 신고채널 만들고 가해행위자 ID 차단!!
3. 메신저 플랫폼에서 금지어 설정, 불법촬영물 공유 막는 물리적 제재

〈출처: 경향신문 2019.3.13 / 연합뉴스 2019.3.24 / 세계일보 2019.4.28〉

내가 가해행위자 라면?

- 피해자에게 개인적 연락(사과 포함)등 접근·접촉 금지
- 자신의 가해행위 인정 및 반성
- 2차가해(악의적 소문, 보복 등)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준수

내가 학교 관계자 라면?

- 피해자 신체·심리·사회적 상황 파악
- 피해자 지지(공감, 상담기구 연계 등) 노력
- 피해자 보호(당사자 분리 등 요청사항) 노력
- 사건처리에 대한 피해자 의사 존중

[사례] 같은 학과 남학생 5명(V, W, X, Y, Z)은 수업 팀과제 작업을 위해 단체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같은 과 신입 여학생 4명(A, B, C, D)을 대상으로 외모품평, 다리등급 매기기, 가슴크기, 텐프로 발언, AV배우 발언, 여학생 몰래 찍은 사진 주고받기 행위를 한 달 간 하였다.

C(피해자)의 남자친구 H(주변인)는 우연한 기회에 X(가해행위자)와 술자리에서 단톡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이 때 H는 X가 촬영한 여자친구 C의 다리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뺏어 카톡방 내용을 상세히 보게 되었다.

H는 여자친구 C에 대한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보고 격분하여 경찰서에 X를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증거로 핸드폰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핸드폰을 돌려 달라는 X의 강력한 항의에 H는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핸드폰을 X에게 돌려주었다. 여기서 X는 H가 핸드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모든 사진을 캡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H는 관련 내용을 캡처하였다.

다음 날, H는 여자친구 C에게 전 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달하며 카톡 내용을 보여주었고, C와 A, B, D는 한 자리에 모여 단톡방 피해 관련하여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 상의하였다.

A는 경찰신고와 학교신고를 동시에 하자고 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했다.

B는 법적 처벌보다 자신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C는 경찰 신고 전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켜보고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경찰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가해자들이 학칙에 따라 처벌받고, 이들과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확실하게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했다.

D는 A, B, C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가해행위자의 사과문 작성 및 게시가 필요하고, 학과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학교가 조사해줄기를 바랐다.

(출처: 윤덕경·이미정·최윤정·장희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사건 처리

A · 학내 신고사건으로 조사처리
· 법적처벌과 별개로 학교처분
· 피해자가 조사반대의 명시적 의사없이 조사중지 불가 (근거: 여가부 표준안 제10조)

B · 학내 신고의사 확인하여 처리
· 신고의사 없는 경우
- 직권조사
- A, C, D신고사건의 참고인 진술하여 참고인 보호조치
- 학생품위손상 사안으로 조치

C · 학내 신고사건으로 조사처리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칙에 근거한 징계와 규정에 근거한 조치(분리 등) 병과 처분 가능 (명확한 근거 제시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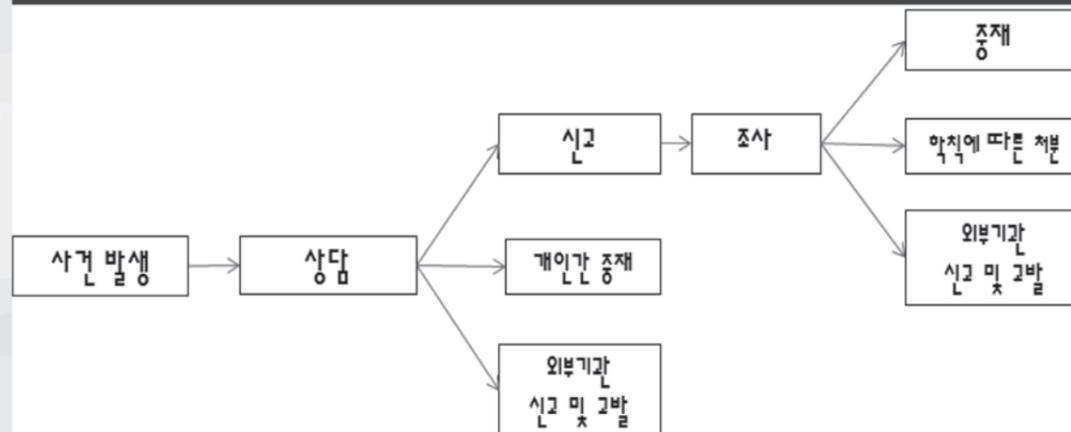
D · A, B, C의견에 부분동의한 내용 확인하여 처리
· 학과 추가피해 조사방법 신중
· 사과문 작성 및 게시는 규정 근거하여 진행 요함 (사과문 공개 게시 논란 주의)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건처리의 근거 - '피해자 의사'

학내처리시 판단 근거 - '피해자 관점' + '합리적 관점'

학내처리 절차의 근거 - 학교 '규정' 에서 정한 절차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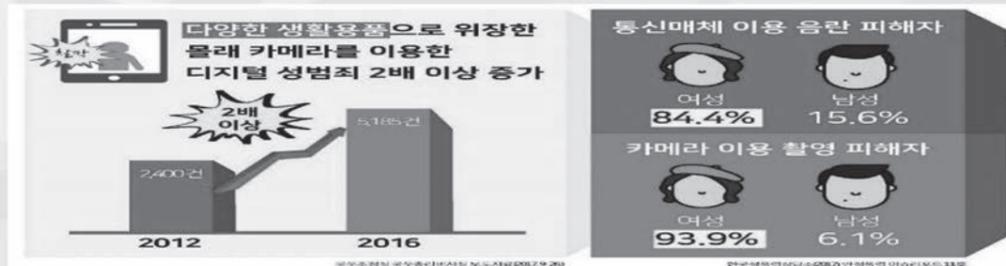
A : '0000대 276명 단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 사실로 확인(00일보 기사 링크)
A : 구해주세요.
B : 궁금합니다.
B : ㅋㅋ
C : 저도요.
방장 : 요런 건 꼭 봐야 합니다.

A : 버닝썬 2탄이 있다고 합니다.
B : 우어어어어.
방장 : 1분 56초
B : 우어어어어어어.
C :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방장 : 1탄과 동일한 플레이지만, 여성이 완전히 물뽕에 취해 있습니다.
D : 공유 줘.
E : 아, 그거는 본 거 같은데.

(출처: 노컷뉴스 2019.7.16 / 노컷뉴스 2019.7.19)

디지털 성범죄

- ▶ 여성을 성적대상화,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왜곡된 성인식이 만든 중대 범죄
- ▶ "가장 큰 위험은 피해자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는 점"
- ▶ 사이버공간의 공연성, 전파성 → 피해 확장/확산, 반영구적 피해 지속 특성으로 피해복구 어려워 생존 위협까지 느낌
- ▶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 → 죄책감없이 범죄를 행함
- ▶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어 → 범죄를 가볍게 여김: 포르노가 범죄냐?!"
- ▶ 불법촬영된 성적 영상물 유통해 영리 취하는 범죄와 결합되어 있음



(출처: 노컷뉴스 2019.7.16)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일 커요.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않기를 하느님께 기도해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000명 대상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연구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에 따르면 피해자의 45.6%(912명)가 자살을 생각했고, 그중 42.3%(385명)이 자살 계획을 세웠으며, 자살계획을 세운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는 19.2%(74명)에 달했다.

"몇 년 전 저의 몰카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걸 알고 당시에 원유포자를 신고해 처벌했습니다. 피해 촬영물들도 거의 다 지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제 영상이 또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조회 수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다시 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중 재유포 피해 사례)

피해 지원(GO)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www.women1366/stopds/) 운영

상담 신청 및 방법

상담 신청 방법: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 전화(02-735-8994)
 상담시간: ☎ 전화상담은 평일 10:00~17:00
 ☎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은 상시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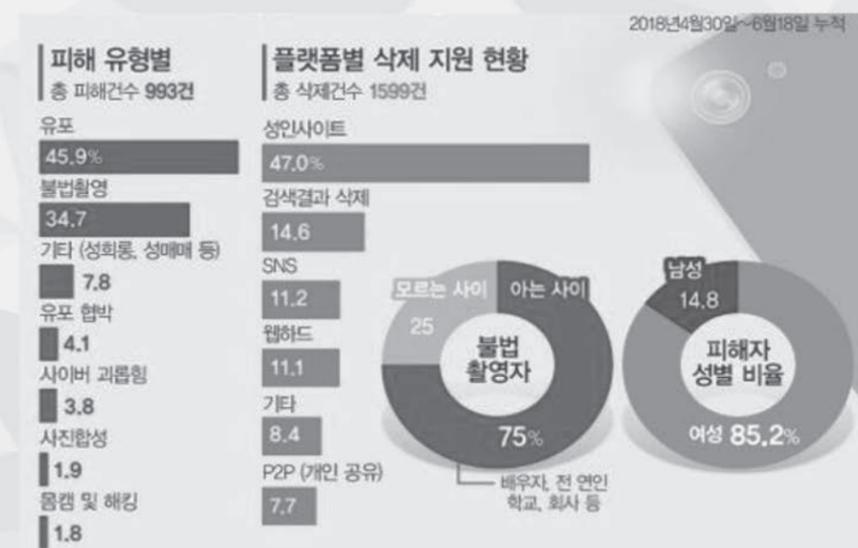
지원내용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지원	기타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피해자 지지 상담	- 피해 영상 삭제 지원 - 관련 증거물 확보 - 삭제 지원 리포트 제작 - 사후 모니터링	- 재증자료 작성 지원 - 신고 및 조사 동행 - 의견서 작성 등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의료 지원 연계 - 보호시설 연계

· 성별, 나이, 가해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이용 피해 및 삭제지원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18,06.21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618uo@newsis.com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공모당선 아이디어 활용 정부·시민 협업 시스템



불법촬영 영상물의 시청각 특징정보(Fingerprint) 생성 통해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 고속 검색



AI와 신체 모델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신고 시스템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정부·시민 공동 불법촬영 대응 플랫폼

〈출처: 연합뉴스 2019.6.20 / 뉴스1 2019.6.20 / 다음뉴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7.22〉

피해자 지원의 핵심은 불법촬영물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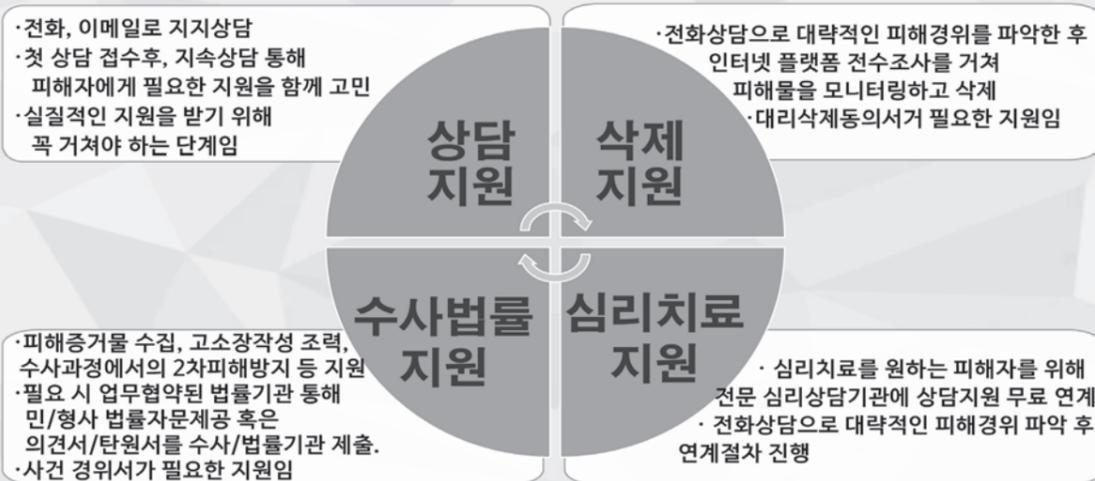
▶ ‘한사성’에서는 이렇게 삭제 지원을 합니다.

1. 증거 확보	업로드된 게시물제목과 본문내용, URL, 파일, 발견된 화면 캡처 등 확보
2. 사건키워드 추출	파일제목, 게시물내용 등을 참고하여 피해촬영물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추출
3. 검색모니터링 착수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 모니터링 작업 착수
4. 검색프로그램 구동	키워드 등록하여 프로그램 구동
5. 검색된 게시물 분류	검색된 결과가 해당 피해촬영물이 맞는지 대조하여 확인
6. 삭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부 등록 국내 P2P 사이트 웹하드업체별로 검색 후 업체에 삭제요청 해외 서버 불법 음란물 사이트 대부분 사이트 관리자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가 많아 서버업체정보 및 도메인 구입·판매자를 찾아 삭제조치를 요구 위 과정을 거쳐 삭제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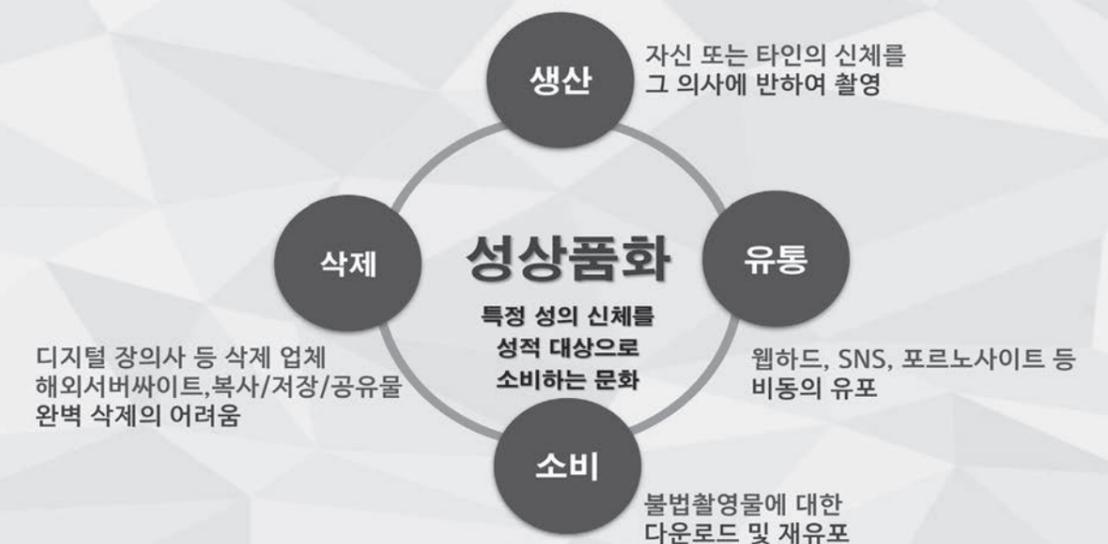
〈출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피해 지원(NGO)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 센터(<http://cyber-lion.com/>)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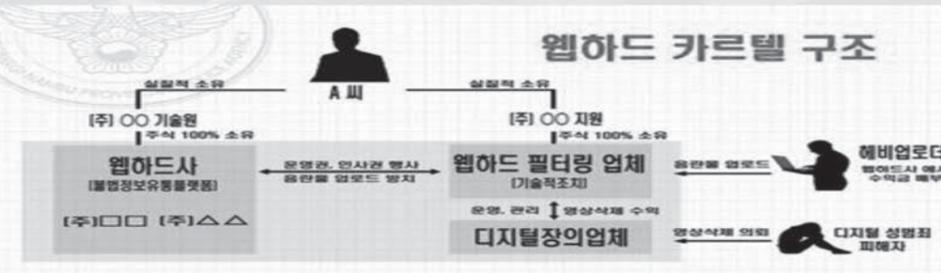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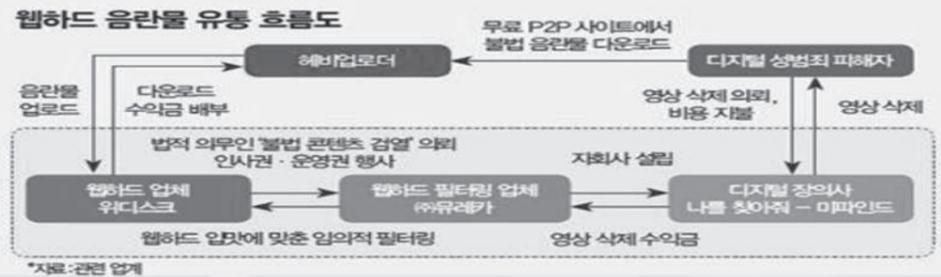


불법촬영이용 디지털성범죄 산업구조



웹하드 카르텔 : 위디스크 양** 회장사례

2017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비동의 성적 영상의 37.8%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생



출처	학교	불법촬영이용 사건 특성
뉴스1 2015.07.03	HI	교내 여자 화장실 버튼형 전등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화장실 양변기를 바라보며 문안 쪽에 붙어있던 것을 발견
뉴스1 2015.07.17	SU	대학 조교 터미널에서 대학생이 모르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
뉴스1 2017.03.06	KR	학내 단통방 성희롱 사건 가해 남학생들의 처벌을 주장하던 학생간부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촬영
KBS뉴스 2017.06.20	MJ	교내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도주했다는 신고
경향신문 2017.7.3	GB	지인능욕 학과 캠퍼스커플 여자친구 얼굴을 포르노배우의 사진과 합성 유포
경향신문 2017.09.03	SS	내부 수심명 불법촬영 경찰이 "불법촬영범 입건후 여죄 수사"
서울신문 2017.10.17	HI	교내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도촬을 시도하던 남성 한 명을 여학우가 발견해 신고
CIVIC뉴스 2018.01.30	HU	지인능욕 여성 지인 카톡 등의 사진을 AI배우 알몸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 제작, 피해자 16명
MBC뉴스 2018.02.28	DK	교내 여자 화장실 12년 전 학교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영상 2개가 재유포되어 학교 신고
스포츠경향 2018.05.04	HI	누드크로키 수업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성모델의 얼굴 및 성기 사진 유포(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6차)
동아닷컴 2018.05.10	KA	276명이 초대대 있는 단체 카톡방 재학생이 21초 가량의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YTN 2018.05.14	HY(SO, KR,SG)	교내 남자 화장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교 남자화장실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 유포

출처	학교	불법촬영이용 사건 특성
이투데이 2018.05.31	JN	대학원 수업에서 대학원생이 누드모델 불법촬영 " 몰카와 성추행 당했다 " ...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정 성별이 같음
위키트리 2018.05.31	GN	교내 남자화장실 외부인이 좌변기 칸에 숨어 남학생의 소변기 용변장면 촬영하며 음란행위
MBC뉴스 2018.06.01	KR	교내 도서관 도서관서 졸업생이 여학생 다리를 불법촬영...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2018.08.26	SO	교내 여자 화장실 교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경찰조사결과 휴대폰서 영상 수십 개 발견, 동종범죄 전력
TV이데일리 2018.10.16	DD	남성외부인이 여대 강의실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 국민청원글, 총장 공개사과(SNS 음란물 유포사건 경과보고 및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
서울경제 2019.01.17	KH	연구동 건물 화장실에 대학원생이 불법촬영기기 설치 화장실 이용하던 여학생이 휴지거리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단디뉴스 2019.01.28	GS	여자기숙사 앞 자위 사진 학교 앱 게시판에 여자기숙사 앞 자위하는 남성 사진 게시
중앙일보 2019.03.19	DK,SG	강의 중 불법촬영 관련 발언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찢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주더라"
국민일보 2019.05.09	GE	수학여행 중 여자 화장실 재학생들이 수학여행 도중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의 퇴학조치를 요구
국제뉴스 2019.06.08	CJ	디자인과 수업 중 모델 불법촬영 수업 중 모델 대상 불법촬영한 남자대학생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
MBC뉴스 2019.08.14	PU	술집 화장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학생 경찰조사 결과 동종범죄 전력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개인의 불법촬영의 문제가 아니다

해비업로더

내가 찍힌영상을 저작권등록까지해서 재휴 콘텐츠로 판다고?

이 거대한 사이버성폭력 '시장'에서 여성은 하나의 재화, 수익상품 취급을 받는다.

해비업로더

영상을 올리면 수익을 웹하드 7, 업로더 3로 가져가죠. 저는 월 500만원 정도를 벌어요.

최근 3개월간 피해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웹하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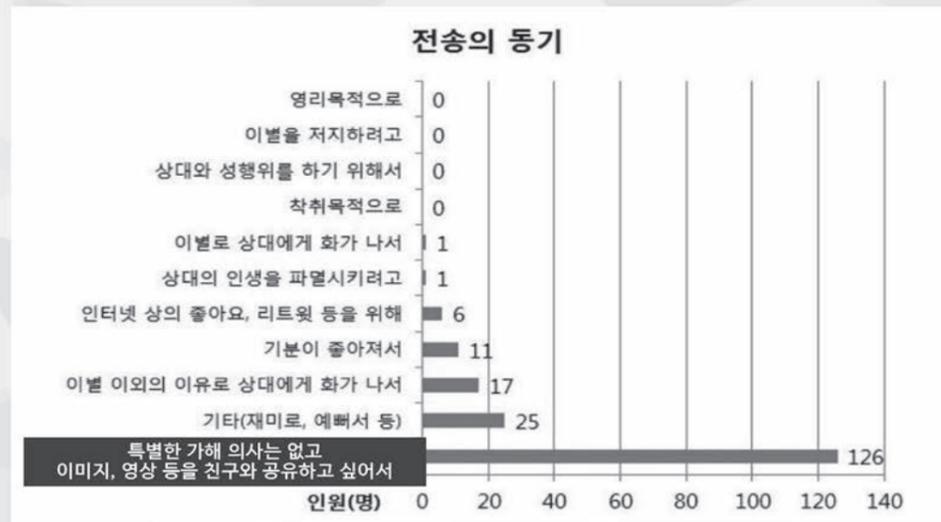
100원 150원 피해촬영물

*국산아동*이 100원 150원에 팔리기까지 촬영자, 유포자, 유료플랫폼 운영자, 디지털장의사가 연관되어있다

걸려봤자 벌금5만원~

미국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 동기

〈출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가능할까?

NO!

1. 여성을,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욕망' 하는 문화
2. 피해촬영물이 '취향'이 되는 문화
3. 피해촬영물을 '소비' 하는 문화



〈출처: 경향신문 2019.3.13 / 연합뉴스 2019.3.24 / 세계일보 2019.4.28〉

이 영상은 불법촬영물 소비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 ✓ 아무도 몰래 찍히지 않는 세상
- ✓ 동의없이 유포된 영상이 소비되지 않는 세상
- ✓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출처: 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상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1.>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1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4. 10. 15.>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0.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11., 2018. 12. 24.>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24.>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계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2018. 12. 24.>

대학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징계의 쟁점 : 학생사례를 중심으로

노 정 민 (고려대학교 성평등센터 전문상담사)

03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MeToo 운동과 그 전개과정에서 보고 있듯이 성희롱·성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서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학 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은 가장 먼저 공론화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진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993년 세상에 알려진 S대학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다. 1992년 5월 29일부터 국립대 모 학과의 기기담당 조교로 취직한 ○조교는 첫 출근 이후, 지속적으로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했다. ○조교는 신체접촉을 모면하게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며, 불쾌감과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희롱을 일삼다가 합당한 사유 없이 1993년 6월 ○조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조교는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해결을 바라는 진정서를 대학에 보냈으나 해당 대학 당국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결국 1993년 8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어찌 보면 이 대자보는 대한민국 최초의 #MeToo 대자보였다. 용기 있는 피해자의 호소로 인하여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여성문제 동아리협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조교의 피해가 사실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때까지도 학교당국은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교수는 1993년 9월에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1999년 6월 25일 최종적으로 △교수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지급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접하게 된 성희롱이라는 용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였고, 이 사건은 당시 만연했던 대학 내 성희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성희롱이 성적 친밀감을 허물없이 주고받는 표현 정도로 간주되어 직장 내의 명량한 분위기를 위해서 여성이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는 정도로 일반화되었던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조교의 용기는 성희롱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지를 알리는 데 기여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사건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판결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며,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성차별 행위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희롱이 처벌될 수 있게 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적절한 눈빛, 성적 함의가 담긴 농담 등의 성희롱에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지를 인식시키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바꾸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한 사건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최초 성희롱 민사소송 사건의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 지금도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의 전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부당한 기본권리 침해경험을 한 피해당사자가 용기내서 주변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제대로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렵사리 동료들과 자치기구의 지원을 받아 구제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학교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처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호소, 그 사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고충이 배가되었다는 문제제기 등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들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내리는 판단과 최종결정이 미흡했다는 피해자 측의 이의제기와 학교가 엄격하게 판단하여 성희롱·성폭력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대상자에게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나면 시작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학교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당국이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자 무거운 과제이다. 행위자로 지목된 구성원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와 최종 판단 그리고 법적 소송에 관한 사항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1.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징

대학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즉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대학 공동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맞물려 있다. 대학은 10대 후반의 새내기 신입생부터 60대 중반의 교원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구성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들은 학생²⁾, 직원³⁾, 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조교⁴⁾ 등 역할과 위치도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의 만남과 관계들이 교원과 학생, 직원과 학생, 또는 교수와 직원 같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선후배, 동아리 동기 등과 같이 공과 사의 영역을 넘나드는 관계맺음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지식을 전달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키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캠퍼스의 일상은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때로는 연애를 하기도 하며,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밤샘작업을 하거나, 동아리실에서 발표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는 등 본연의 연구와 학생지도 외에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몇 년이 지나면 공동체를 떠나기 때문에 매년 졸업과 입학울 통해 구성원들이 바뀌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유동적인 구성원들이 적게는 몇 천 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에 이르는 커다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곳이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2015년 여성가족부⁵⁾의 연구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각각 49.2%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도 2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⁶⁾의 연구에서도 2009년부터 2011년간 사건관계 유형별로 사건의 건수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학생 - 학생'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교직원 - 학생' 사건, 다음은 '교직원 - 교직원'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p. 84)고 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 - 학생' 사건은 평균 1.6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교직원 - 학생' 사건(0.8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2015년 여성가족부의 연구나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 공히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건당사자 관계에서 학생 - 학생 간에 발생하는 사건이 교직원 - 학생 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2배를 넘는다는 것과 사건발생 및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어렵고 힘든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학생 간 또는 교수와 학생 간 사건은 당사자들의 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의 양상과 해결 과정도 차이가 난다⁷⁾.

단순히 사건의 발생 빈도만 볼 때는 학생 간 사건이 가장 많고, 발생 경위와 처리 방법들이 다양한데, 학생들 사이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이유는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인적 구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학생 - 학생 간에는 교수 - 학생의 관계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학생커뮤니티의 변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단순 일회성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통 동아리나 학과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단일 사건에 대한 신고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은 자신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와 대인관계 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수 -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 못지않게 고통을 겪게 된다.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성희롱·성폭력 피해당사자라고 신고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대부분 피해 초반에는 혼자 감당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참고 견디려던 피해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문이 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면 피해학생은 학업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학생들의 자치기구나 교내 상담기구를 찾게 된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양상이 공개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전에는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 둘이 있는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함의를 담은 모욕적 언사를 함부로 하는 행위로 인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대학의 사례 가운데는 신입생 환영회나 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여럿이 모인 가운데 특정 개인에게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의 요구 또는 사생활에 대한 성적 언급 등을 공개적으로 일삼다가 외부에 알려져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과 피해가 상당기간 방치되었다가 문제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 보호와 상황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나서서 사안을 공론화 하며, 행위자에 대한 항의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식으로 공동체 내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2. 관련법과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적용

국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그에 따른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외래교수(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대우·특임·객원·석좌·명예·기금교수 등), 기타교수(강의전담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연구교수 등), 연구원(석사급 혹은 박사급의 행정연구원, 프로젝트연구원·실험실습연구원 등)]으로 구분됨.

2) 학생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재학생과 휴학생, 학점교류 수강생,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학교부속교육기관의 내국인 수강생(예, 평생교육원 등)과 외국인 수강생(예, 한국어센터) 등 다양함.

3) 직원은 정규직 직원, 계약직 직원, 산학활동·기숙사운영·식당운영·보완관리·주차시설관리·건물관리 등을 위한 협력업체 직원 등 학교에 따라 분류체계가 다양함.

4) 조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업형 조교,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감면을 받는 직업형 겸 학생 조교, 대학원생 조교 등이 있으며, 학교특성에 따라 조교를 교원으로 분류하는 학교도 있고, 직원으로 분류하는 학교도 있음.

5) 여성가족부.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6) 국가인권위원회.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7) 교수와 직원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 모두 현행법 위반여부를 가려 학교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는 자치기구(학생회, 동아리 등)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대자보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학내 상담기구를 통해 사건이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와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사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 호의 조치내용은 ①.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③.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④.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⑤.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의 내용이 그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1] 현행법 상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구분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요건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정의	제3조(정의)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제2조(정의) 제2호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금지원칙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의 정의	제2조(정의)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표2] 현행법 상 ‘성폭력 범죄’의 개념

구분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요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동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성희롱 방지조치 시행 의무기관이다. 게다가 대학에는 교원과 직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 존재하고, 그들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해당 법률의 제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5항에서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의 및 개념은 대학에 고용된 교원이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은 형사범죄로 규율하는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의 자체적인 징계위원회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성희롱을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협소한 범주에 가둬두고 있고, 그 시야를 쉽사리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정리한 표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조차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차별시정 대상인 성희롱을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종사자 등이 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석을 통하여 차별시정 구제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왔다. 하지만 교수 -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포섭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하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가 행한 점, 그리고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이라는 점까지 전부 인정되어야 비로소 이 법에 따른 성희롱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은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지 이것이 관건이다. 학생들의 관계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 학생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종사자'인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직원이 업무일 아닌 휴일에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어느 학생에게 같은 대학의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혐오스러운 성적 언동을 했다고 가정할 때, 이런 경우까지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

이는 굴욕감을 주는 성적 언동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성희롱이지만 법률에 따라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대학 내 성희롱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간 성희롱은 법률상의 정의에 따른 성희롱이 아니다. 대학이 성희롱 예방 규정을 마련할 때, 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에 의한 성적 모욕감 유발에 대한 피해는 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누가 어떤 관계에서 범했든, 성희롱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요하기에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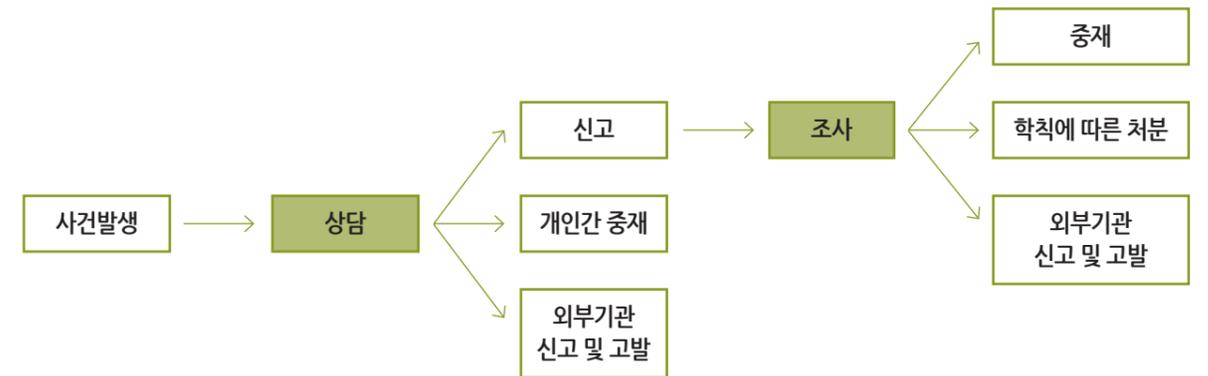
'업무·고용 등',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 등의 요건은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성적 언동을 법률상의 성희롱으로 포섭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배제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다. 규제되어 마땅한 것을 빠짐없이 규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법률 규정을 그대로 따른 성희롱 예방규정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는 현실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현행법의 적용이 어려운 성희롱 문제가 대학의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성평등 기구 등 각 대학 내 전담기구에 의해 메워질 수 있다. 대학 내 성평등 기구의 존재 의의와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사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교육·응보적 효과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면 대학 내 학생 간 성희롱 사안에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는 대학 내 성평등 전담기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내 성평등 기구의 역할과 권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한다.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창구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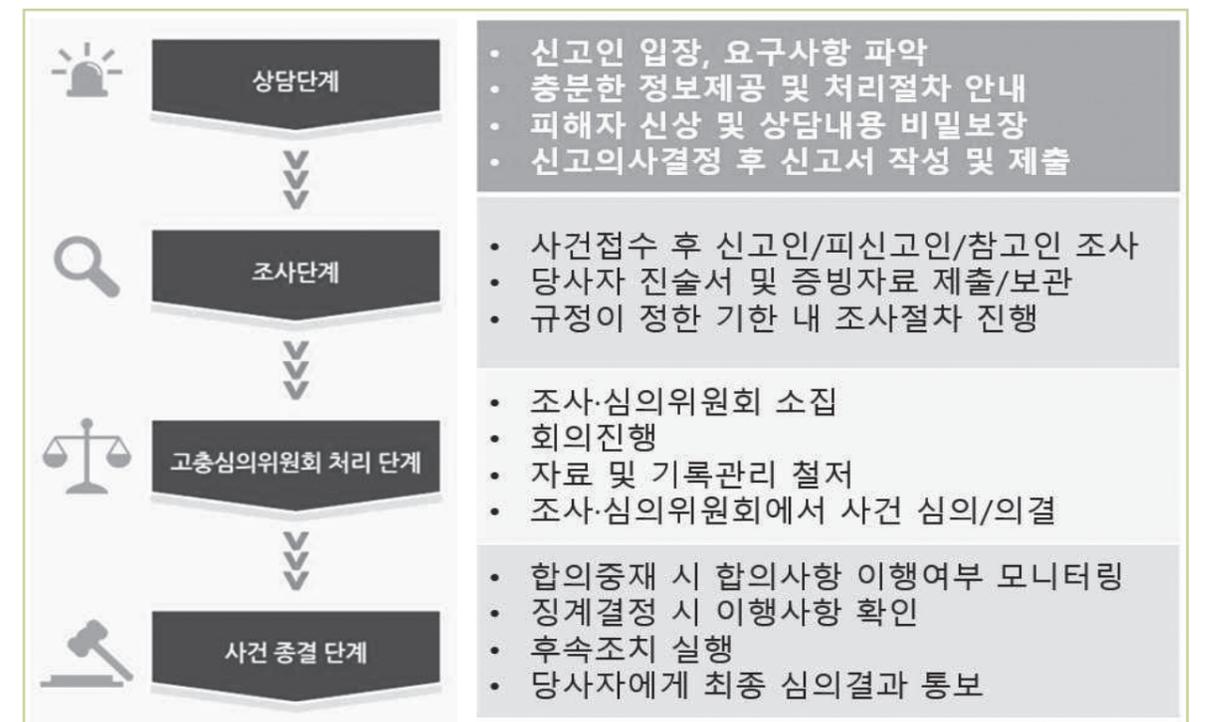
대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이원적 구조로 진행된다. 그 하나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학칙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사건 접수 및 조사, 합의 및 조정절차, 조정절차에 따른 행위자 조치, 징계요청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사항에 관한 법규와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조사, 징계결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이다. 사건을 학내 전담기구에 신고·접수한 이후 피해 당사자가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중재를 전담기구가 담당하기도 하고, 대학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 그림은 2018년 교육부가 배포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⁸⁾에서 발췌(112p.)한 것이다.

[그림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초기 사건처리 단계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사안을 대응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학내 전담기구와 상의하여 사건처리가 진행되기도 한다.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고충 상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심리적 지원은 물론 교내규정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 상의, 사건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사건 당사자와 신뢰관계를 쌓지 못하면 이후 사건처리 과정 내내 학교와 사건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신에 따른 문제제기로 이어지게 된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전반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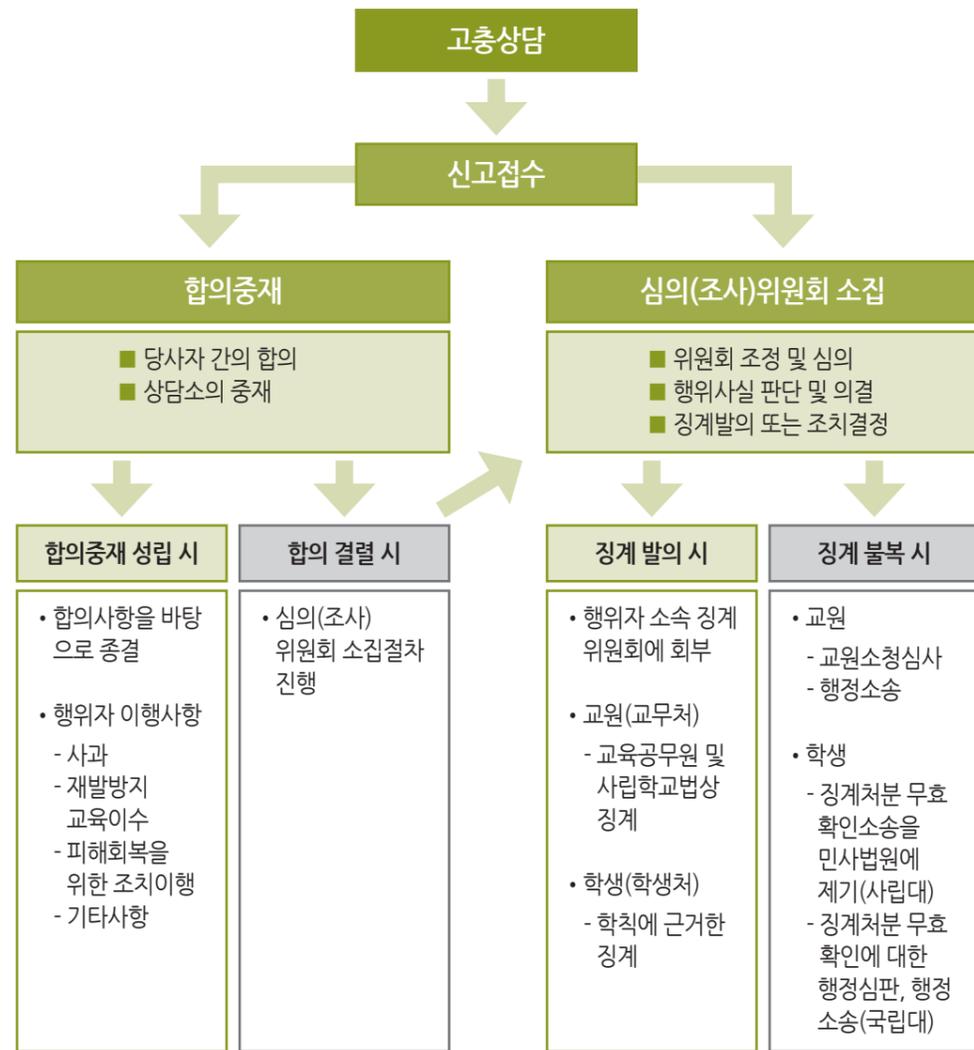


8) 교육부,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서 접수된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위원회 소집을 통해 심의·의결하여 마무리하더라도 전담기구의 업무는 계속된다. 중재조정을 통해 일단락된 경우라면 중재 당시 합의된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행위자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합의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의 전제조건은 합의사항이 준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합의조정을 통한 사건처리는 당사자들이 졸업하여 더 이상 구성원으로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그 시점까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위원회를 소집하여 신고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학생이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반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받을만하다고 결정하면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학생처 소관 학생상벌위원회 또는 학생징계위원회 등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위원회에 회부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해당 사건을 징계발의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역할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징계절차 진행과 징계를 의결하고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또 다른 절차이다.

[그림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구제 절차의 개관⁹⁾



9) 교육부.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19p. 수정

4. 대학 성희롱·성폭력 학생행위자 징계 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가 대학 내 전담기구의 조사·심의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기구에 신고 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학교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구라면 이제 징계발의 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학생처의 몫이다¹⁰⁾. 공동체 구성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과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구성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 또는 불공정 및 부당 징계 등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징계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에 따라 총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되었다.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통상적으로 학생을 징계하는 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다.

[표3] 대학별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비교

대학	규정명과 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처벌 근거규정 및 징계종류
고려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일 2019.07.01.) 학생상벌위원회 (교무부총장이 위원장, 40일 이내 심의완료)	제7조(징계사유) 제1항 제9호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계 요청의 대상이 된 학생 제8조(징계의 종류) 1. 근신 →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 7일 이상 1개월 미만.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처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근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학 처분 가능.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특별지도 받아야 함. 2. 정학 →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분하며 기간은 1개월 이상. 처분이 해제될 때까지 수업을 포함하여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음. 처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정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학 처분 가능.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특별지도 받아야 함. 무기정학 처분은 1년이 지나고 반성 사실이 현저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해제사유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기정학 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퇴학 → 제적함, 재입학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제의가 있어야 함. 퇴학처분의 사유가 성희롱·성폭력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음. 제14조(봉사명령) 제1항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고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상벌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처분 대신 봉사명령을 부과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제15조(부가조치) 제2항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교육의 이수, 상담 또는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

10) 학생의 경우는 학생처 소관 학생징계 담당 위원회에서 다루지만 교원은 교무처, 직원은 총무처와 같이 대학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소관 부처와 위원회가 달라지며, 징계수위와 징계결의 기준이 되는 규정도 상이하다.

서울대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일 2014.05.16.) 위원회 (교육부총장이 위원장, 30일 이내 의결, 10일에 한해 기간연장 가능)	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제8호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 서울대 인권센터가 2012년 개소되고, 「인권센터 규정」이 2014년10월21일 전부개정 되었는데 현재 유효한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인권센터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제6조(감사원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와의 관계)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1. 근신 : 7일 이상 1월 이하, 2회 이상은 정학의결 2. 정학 :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분하고 1월 이상 3월 이상의 정학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명의결 3. 제명 징계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격, 개전의 경,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음.
	학생징계규정 (최근 개정일 2018.02.21.) 학생징계위원회 (단과대, 캠퍼스별 소집)	제7조(폭행과 상해해위 등) 제3항 교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성희롱 및 성폭행을 한 학생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4조(징계의 종류) 근신 : 1주 미만의 확정기간, 강의수강 이외의 학생활동 할 수 없음 유기정학 : 1주 이상 6개월 미만의 확정기간 무기정학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정지 제적

학생의 징계 사유에 관해서는 대학별로 자율성이 법령에 의해 포괄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학들은 별도로 규정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그 방식은 대학마다 다양한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규정에 근거한 징계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학생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대학도 있으나, 기타 학칙의 위반 내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학교도 있다.

징계의 대상이 학생인 경우 징계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학생징계위원회 또는 학생상벌위원회라고 부르는 위원회의 의결권고에 따라 대학 총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위원회 진행의 절차 중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해야 하고,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심이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심의 또는 재의결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나 징계처분 결정 이후 지금까지 검토하지 못한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학생의 경우 학교가 결정한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선 사립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대학의 징계에 대해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립대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5. 대학 성희롱·성폭력 학생행위자 징계의 딜레마

대학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많은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행위를 어떤 수위로 징계양정을 정해 의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비슷한 행위에 대한 대학별 징계수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결과에 대해 피해자나 학생자치기구는 수위가 너무 낮다며 학교를 비판하곤 한다.

[표4]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성폭력 학생행위자 징계사례

행위		징계 결과	이후
SNS 단체대화방 언어적 성희롱	A대학	200시간 봉사명령과 공개 사과문 게재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 혐의 인정+징계수준 적법판단 2심 : 성희롱 혐의 인정하지만 공개사과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B대학	무기정학 처분과 성인지 향상교육 40시간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 혐의 인정+징계 적법판단
	C대학	2명은 무기정학, 4명은 근신	징계수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
	D대학	1~5개월 유기정학, 근신	징계수위가 낮다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 게시
	E대학	3명 무기정학, 3명 1~3개월 유기정학	징계수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
	F대학	2~3주 유기정학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수용하여 징계효력 정지 학교당국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수업분리
	G대학	퇴학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 비행정도에 비해 과한 징계 판단 2심 : 퇴학 취소, 반성의 기회부여
불법촬영	H대학	3개월 유기정학	징계수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
성폭력	J대학	퇴학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 기각
	K대학	퇴학	피해자가 형사소송 진행 중 학교의 퇴학 처분 결정 이후 소송취하, 집행유예 처분
	L대학	무기정학	피해자가 형사소송하여 실형 2년6개월 확정

사실 문제가 되는 행위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그 공동체의 의식수준과 문제의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서구에서 인종차별적 언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져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어느 음료매장의 직원이 손님에게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였다가 매장은 문을 닫고 직원은 해고되었다는 기사¹¹⁾를 보면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기준이 우리 사회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따라서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수위로 책임을 묻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사소하게 여길수록 징계수위는 낮아질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할수록 징계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대학 공동체 구성원의 성인지감수성이 향상되고 있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진데다가 2017년 가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MeToo 운동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성 문제는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가 발의된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을 위해 적어도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1) "한국인에 '재키 켄'... 美 스무디킹 인종차별로 매장 닫고 직원해고" (2019년 6월 4일자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4117900009?input=1195m

- 행위가 일회성인가, 상습적인가?
- 피해자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 행위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속하는가?
- 피해자에게 미친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행위자가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행위자의 노력에 따라 피해회복이 가능한가?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가?
- 행위자가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 행위자의 행위가 우리 대학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가?
- 행위자가 우리 대학이 기대하는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얼마나 훼손하였는가?
- 행위자가 우리 대학 공동체의 안전을 추후에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가?

사법심사의 경우 대학의 자율적인 징계처분에 대해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그 자율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 1627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결정하는 징계수준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행위자는 행위자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복절차를 밟거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징계가 부당하지 여부 등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례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징계처분에 대해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그 자율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판례상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인정범위가 재판마다 비밀관적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학의 징계처분은 교육권에 기반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준으로 징계처분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성희롱·성폭력 내용에 대해 대학 내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사법상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당해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사법상 대학의 자율권 인정의 정도가 일관되어 있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결정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의 자율적인 사건 처리가 위축되는 사법판단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대학 내 징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의 문제도 존재한다. 징계절차가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데 때로는 진행과정이 소홀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중요한 징계처분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권, 기피신청권의 보장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것이다. 판례상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이나 조사신청권 등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조사·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의 기피신청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징계혐의자의 권리보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절차 등 별도의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징계시효가 도과하는 경우 이를 시효계산에서 배제하는 등 징계처리에 있어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예방해야 마땅하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공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교육부는 초·중·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¹²⁾. 앞으로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로 징계를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은 졸업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2020년까지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때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결의지와 처리 및 최종의결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하여 엄벌할 법적 장치는 마련이 되었다. 문제의 해결은 대학 당국 차원의 강력한 징계 의지에 달려있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기보다 학내 전담기구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 대학의 징계위원회는 피해 학생이 최후의 보루로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관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결국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대학 당국의 해결의지가 관건이다.

6. 참고법령 및 대학 규정

고등교육법	고려대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징계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참고 자료

경향신문. “대학가, 은밀한 대화 ‘남톡방 주의보’ ... 선 넘은 대학생 (2016. 9. 13)

경향신문. “법원 ‘징계정지’ 결정에 성희롱 남학생 수업분리” (2019. 5. 25)

교육부.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노컷뉴스. “카톡방 ‘성희롱’ 가해학생 징계 ... 송방망이 처벌 시골” (2018. 6. 26)

뉴스1.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교·사범대생 교원자격 취득 때 불이익” (2019. 6. 28)

더팩트. “[성폭력 얼룩진 캠퍼스②] 엄벌 피하는 온정주의 ... 대학 의지에 달렸다” (2019. 6. 3)

여성가족부.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연합뉴스. “한국인에 ‘재키 찬’... 美 스무디킹 인종차별로 매장 닫고 직원해고” (2019. 6. 4)

연합뉴스.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들어야 교원자격 준다” (2019. 6. 28)

의협신문. “비공개 대화방도 안돼” 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반복적·고의성 인정되면 ‘음란물 유포죄’도 적용 (2019. 7. 28)

파이낸셜 뉴스. “카톡방 성희롱 대학생, 2심 퇴학 취소, 반성의 기회 줘야” (2019. 6. 2)

허프포스트코리아. “드디어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016. 10. 7)

JTBC 뉴스룸. 서지현 검사 인터뷰 (2018. 1. 29)

KBS 뉴스.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송방망이 징계 규탄” (2018. 8. 30)

MBC 뉴스. “성희롱 인정 않는 가해자에 공개사과 징계, 양심자유 침해” (2019. 6. 4)

MBN 뉴스. “후배 성추행해서 퇴학당한 대학생 ... 법원 ‘퇴학 처분 취소 불가’” (2018. 7. 29)

YTN 뉴스. “전 여친 나체사진 돌려봐 ... 대학생 징계위 회부” (2018. 8. 5)

12)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들어야 교원자격 준다” (2019년 6월 28일자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7162400004?input=1195m>

II.

「대학 성폭력 피해 위기개입과 상담지원」 직무연수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10:00 ~ 17:00

장소 : 고려대학교(서울) 백주년기념관 지하 국제원격회의실

일 정 표

시간(분)	주요 내용
10:00~10:20(20)	등록
10:20~10:30(10)	직무연수 과정 소개
10:30~12:00(90)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착안점 - 강 주 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센터(상담) 전임상담원)
12:00~13:00(60)	중식
13:00~14:30(90)	피해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전략 - 이 형 주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사)
14:30~14:50(20)	Tea Break
14:50~16:20(90)	피해내담자와 치유회복 상담 유의점 - 고 경 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학생상담센터 객원연구원)
16:20~17:00(40)	대학 간 네트워킹 및 종합 정리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착안점

강 주 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센터(상담) 전임상담원)

01

1.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성폭력 피해의 발생과 대응 극복하는 과정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폭력 통념이다. 성폭력 통념은 강간 통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되어 왔다. Burt(1980)는 강간 통념을 “강간과 강간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편향적이고, 틀에 박히거나 혹은 잘못된 신념”으로 정의 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는 사건자체, 혹은 사건의 발생 등에 대한 판단과 감정, 사건의 심리적, 물리적 영향, 주변의 반응, 사건화 후 각종 형사법적 과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통념에 따라 달라진다. 캠벨 드워킨, 캐브럴(Campbell, Dworkin, Cabral, 2009)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인적 특성, 사건특성, 가족/주변 반응, 경찰 병원 상담소 분위기, 사회적 통념/분위기, 재피해/다중피해로 나누었다. 김민정은 ‘성폭력 피해란 특정 사건으로 인한 하나의 피해가 아닌 이 모든 메카니즘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재구성되는 다층적 피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리하고 있다(2015:175).

성폭력 통념에 대한 연구를 통한 논의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 사법 기관 등을 통해 경험하는 2차 피해이다. 이미경(2012)의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을 통해 경험된 성폭력 통념이 어떻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지 분석하였다. 수사관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저항과 동의를 중시하는 수사 행동을 증가시키고 증거 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클수록 이와 같이 저항, 동의를 중시하는 수사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두 번째로 성폭력 통념 경험이 주변에서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수용, 내면화 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 및 회복력을 낮추고 PTSD등 성폭력 후유증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강차선, 박정환, 2012). 세 번째 성 역할 고정 관념,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 위험 역시 높고, 성폭력 통념이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선미, 송원영, 2012). 네 번째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유형에 따라 성폭력 통념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그 경험 횟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전반적인 성폭력 통념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낯선 이(비면식)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의심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자체를 부정하려는 통념들이 오히려 더욱 많이 작동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전형에 부합하는 비면식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통념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결론적으로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데이트, 공동체 안에서의 성폭력의 경우 통념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표1] 성폭력 통념 (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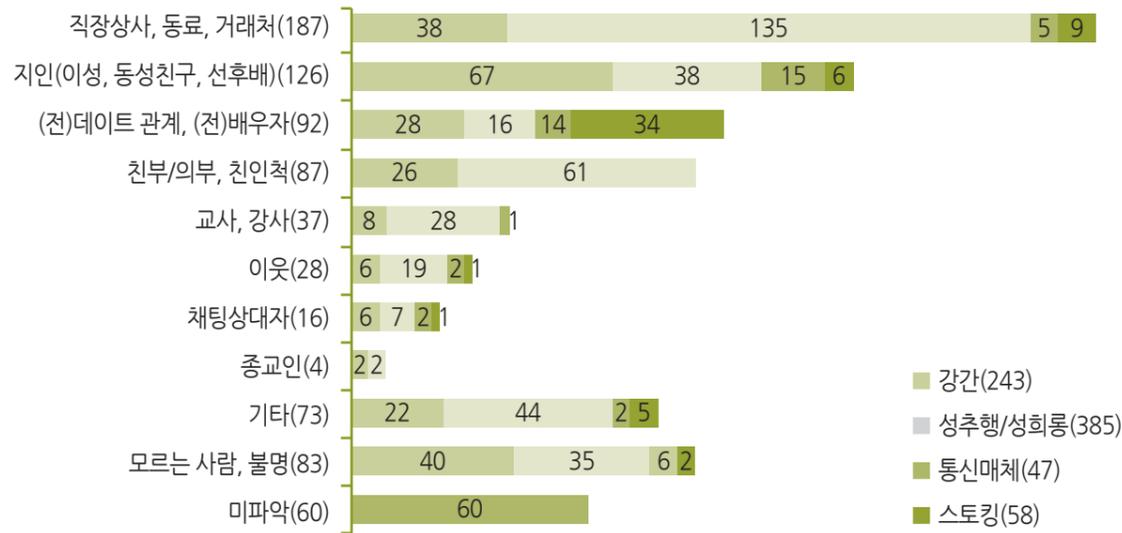
분류	문항
피해자 낙인 (5문항)	성폭력을 당한 여자의 몸은 더럽혀진 것이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인생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너는 성폭력을 당했으니 앞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 비난 (4문항)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성폭력은 네가 유혹하거나 유발한 면이 있다.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피해 사소화 (4문항)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문제가 있는 여자이다.
	남자가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 실수한 것이다.
	네가 과도하게 예민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피해 의심 (3문항)	네가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너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너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너도 사실 그 당시에는 즐겼을 수도 있다.
피해 의심 (3문항)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여자들은 보복심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성폭력 신고를 하기도 한다.

[표2] 가해자와의 관계별 성폭력 통념경험 평균 비교 (김보화, 추지현, 이미경 2017)

	친족	비면식	데이트	공동체	기타	F	사후검정(Duncan)
성폭력 통념 전체	5.82	4.24	5.80	5.90	4.77	1.588	
피해자 낙인	2.14	1.48	1.66	1.66	1.58	1.057	
피해 사소화	1.98	1.69	1.97	2.04	1.62	.885	
피해 의심	.59	.24	.66	.74	.38	2.680*	비면식 < 데이트, 공동체
피해자 비난	1.12	.83	1.51	1.46	1.16	2.065	

* $p < .05$, ** $p < .01$, *** $p < .001$

[표3]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성폭력유형건수 (중복포함/ 한국여성민우회 2010 상담통계)



2.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성 학대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강요, 강압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경희, 2004). 이러한 범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순한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경우부터 전통적인 성범죄인 강간, 성추행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는 분명히 질적, 양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성추행 피해자의 심리로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폭력 당한 직후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구속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공수자, 이정숙, 2004:51-63).

첫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체하지 못해 죽고 싶어함.

둘째,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및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마조마함.

셋째, 성폭력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함.

넷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함.

다섯째,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태움.

여섯째, 병원, 성폭력상담소, 경찰서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남.

일곱째,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스러움과 섭섭함.

여덟째, 돌이키지 못하는 일에 대한 자책.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들이 타인의 도움을 통해 최초의 혼란과 동요가 서서히 전환국면으로 돌아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진행단계는 아래와 같다(한국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첫째, 충격과 혼란의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나는 아무도 믿지 못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라는 불신감,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VS “아니야 나는 이제 끝장이야”라는 혼란,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둘째, 부정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나는 강간당한 적 없어”, “꿈에 불과해” 등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

셋째, 우울 및 죄책감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 창피해, 난 어떡하면 좋아”라는 수치심, “내가 자초한 일이야”라는 자기 비난, “그 일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라는 잘못된 분노의 표출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넷째, 공포 및 불안감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강간당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흉보고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건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등의 불안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면서도 악몽을 꾸게 되는 단계를 느끼게 된다.

다섯째, 분노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분노의 대상에 따라 “화가 치밀어, 왜 하필 나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가해자와 일반 남성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의 단계를 느끼게 된다.

여섯째, 재수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자기 삶은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며, 성폭력을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단계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반응 역시 충격 단계, 반동단계, 재조직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성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노출되어 있고, 공격에 취약하다고 느끼며 무기력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 충격단계,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 두려움,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반동단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두려움과 분노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더욱 정상적인 상태가 되며 일상 활동과 직면할 수 있는 활력을 갖게 되는 재조직 단계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Doerner and Lab, 1988:112-115, 조현빈 재인용).

이러한 전환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공수자, 2004 : 913-923).

첫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벗어남이다. 성폭력은 사회적 낙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심리적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전문적 상담원이나 경찰서, 병원들의 관계를 통하여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아마 엄마한테 말한다면 바로 자취를 못하게 하고 저를 믿지 못하실거예요).

둘째, 사건의 재구성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이다. 경험적인 연구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좀 더 반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 등의 후회에 대하여 막연한 후회 감정 대신에 그때 상황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수용하게 된다(제가 교수님께 같이 에프터 팀에 넣어달라고 먼저 말한 것에 대해 자책했는데, 상담을 받으며 말하다 보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학생으로서 교수와 친해지고 싶었던 동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셋째, 의문이나 걱정되는 일을 의논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 직후, 혼자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기 보다는 지역사회 등의 원조로 걱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논하는 것이다(제가 신고를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적은 처벌을 받고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 후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죠?).

넷째, 지지 받음을 통한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족, 친구, 종교, 전문가로부터 받은 지지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느끼게 된다.

3. 성적자기 결정권의 이해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어려운 지점은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성폭력인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 자체에 대한 여성의 주관적 의미가 중요하다(Kelly, 1988: 정명희, 2004:172). ‘성폭력’에 있어서 ‘성적자기 결정권’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성적인 행동이 상대 여성과의 상호 주관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었는지, 또 피해자가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인지적, 윤리적 조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적 자율성의 침해에 대해

여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혐오감, 분노 등의 감정은 그 침해에 대한 본능적인 반사 감각이라기보다는 맥락적 상황에서 해석적 행위를 통하여 도달하는 이해라고 볼 수 있다(조현빈, 2006).

사례

그 이전에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녀는 저에게 자신이 최근에 이성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서로 손이 스치며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기숙사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서로 호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와 헤어질 때 천천히 벽 쪽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도 입술을 움직여서 저의 우리의 스킨십이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24세, 00씨>

모텔에 가자고 저는 말했고, 그때 **가 갑자기 저의 팔짱을 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동의로 보았죠. 그 당시 **는 그렇게 많이 취해있지 않았어요. 똑바로 걷고, 제가 말했을 때 웃기도 하고 그랬죠. 술 마시는 내내 우린 함께 즐겁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 싫은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30세. 졸업생 00씨>

**가 너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멀쩡히 집에 들어 가길래 취한 줄 몰랐고, 집에 가서 눕히고 제가 옆에 앉았는데 제 쪽으로 돌아누워서 우린 서로 키스를 하기 시작했죠. <24세, 대2 00씨>

4.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이해하기

‘성폭력 피해자에서 MMPI 특성’(김정현, 도진아, 최인철, 임명호, 2015) 연구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척도는 D, Sc, P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집단에서 나타나는 외상 경험과 관련된 강렬한 불안이나 신체화 증상, 회피 반응 등의 양상보다는 불안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방어하는 것에 대한 실패로 유발되는 마술적 사고나 내적 환상으로의 도피와 같은 보다 원시적인 방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강력한 외상경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강렬한 불안의 호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요구하기보다, 치료진에게도 예민하고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치료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초기개입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와 함께 내담자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감이나 급성적인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김정현, 도진아, 최인철, 임명호, 2015).

5. 성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유의할 점

성폭력 상담에서 항상 만나는 부분은 피해자의 “내가 거기 안 갔더라면... 술을 덜 마셨더라면...”과 같은 자기 후회의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통제감은 과거 통제감(행동적인 자기비난)에 속한다. Frazier등(2002)은 외상적인 사건에 대한 적응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시간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지각된 과거 통제감은 외상적 사건의 발생 자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지각하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과거 통제감은 외상의 원인에 대한 귀인으로 다시 개념화할 수 있다(Thompson, 1981).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과거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매우 심한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 시간적 모형에서 현재 통제감은 외상적인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각으로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성격을 띤다(이성진, 조용래, 2009).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과정에 대한 통제감은 보다 낮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연관되어 있었고, 가장 적응적인 예측요인이었다(Frazier, 2003). 또한 시간적 모형에서 지각된 미래통제감은 미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보다 그 사건이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신념이 낮은 수준의 고통과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Frazier, 2003). 이는 성폭력 상담에 있어서 과거 통제감은 낮추고, 현재 통제

감을 높이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성폭력 자체의 특성보다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인지적 평가 및 대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인지와 시각을 살펴 보고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 지원의 첫걸음이다(김소향, 최지영, 2018). 피해자를 초기에 면담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올바른 답변을 통해 내담자가 자책감을 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6. 성폭력 피해자 상담하기

전화면담 혹은 예약 시 “성폭력 상담 가능한가요?”라고 이야기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전화걸기 힘드셨죠? 잘 하셨습니다.”라며 용기를 주며 상담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약 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어 다시 한 번 격려하도록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예약하고 막상 오려고 하면 두렵다고 합니다. 00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오랫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법기를 희망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하는 첫날 초기 면담은 자연스러운 인터뷰 형식이며, 내담자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금 딱딱한 사실에 대해 물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만일 질문이 너무 불편한 경우 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너 아니면 나, 정희은). 두 번째 성폭력 관련 상담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상담 내용 중 자신이 염려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거나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적절한 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시) 내담자 : 술을 덜 마셨더라면,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크게 소리쳤어야했는데
 상담자 : 그럴 만큼 혼란스럽고 자신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벌어진 사건으로 이해 되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그 장소에 내가 갔다고 해서 성폭행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폭행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담자 : 네 제 탓 같아요.
 상담자 : 나도 내편이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탓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내 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담자 : 제가 피해자가 되는 기분이 힘들어요. (슬픔과 접촉)

예시) 내담자 : 저는 당시에 말하기 힘들지만, 어떤 성적인 흥분을 느꼈어요. 매우 혼란스러워요
 상담자 : 우리 신체는 자극과 반응으로 성적인 자극을 받을 경우 쾌감을 주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극과 반응은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쾌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시) 내담자 : 성폭력이 심해졌지만 저는 사귀는 사람과 바로 헤어지지 못했어요.
 상담자 : 어떤 것 때문에 그랬었나요?
 내담자 : 헤어지는 건 두려웠어요.
 상담자 : 성폭력이 심해져도 헤어지지 못했다면 더 힘든 시간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폭행이 싫어도 관계를 끊는 게 어려워 헤어지지 못했다면 내가 외로웠다는 걸 의미하지 성폭행을 원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해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전략

이 형 주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사)

02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상담 기구의 변화

사회 여러 분야에서 #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학은 가장 빈번하게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기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학생-학생, 교수-학생, 직원-학생 등 구성 관계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사건의 성격 또한 상이하며, 대학별 사건처리 구조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해결이 어려운 구조에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2018).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의 구조는 대학이 갖고 있는 문화와 관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학 내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는 책임과 소명으로 공통되고 일관되게 내담자에게 심리적 조력을 하고 있다.

대학 내 심리상담기구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 간 대학생의 심리 지원을 하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0년대 후반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1999년) 국가적 차원에서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여성발전기본법(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 변경)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각 대학들도 2000년대 초반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학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개소하면서 이후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양성평등센터, 성평등센터 등)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권기구가 신설되거나, 기존 상담기구와 통합 운영되기도 하면서 대학 내 상담기구는 심리상담, 성희롱·성폭력 상담, 인권기구의 형태로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 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도 있지만, 기존의 심리상담 기구가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인권기구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에서 근무하는 상담자는 다양한 역할 정체성을 갖고 있다.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는 대학의 상담자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환경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 여러 위기에 처한 내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늘 고민을 하게 된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담자에 대한 개입은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심리 치료적 개입 뿐 아니라 법과 규정 등을 통해 실제적 해결을 해야 하는 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상담자는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전문적 준비와 함께 실제적 해결을 위한 사건처리 정보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지원해야 하는 기관의 책무와 연계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더해져 상담사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내담자가 경험하는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위기는 어떤 일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의미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리적, 신체적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각자 위기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의미가 다르며 그렇기에 주관적 경험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 는 별 것 아닌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연구원, 대학 성희롱 고충 상담원 연수 과정, 2012).

본문에서는 대학 내 상담사로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입해야 할지 상담자가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담 기구 업무 유의 사항

- 상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상담이 바로 사건 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상담은 언제나 (피해) 내담자의 페이스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 상담자는 (피해) 내담자가 미리 어떤 결론을 예단 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 상담은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사건처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의 기회이기도 하다.
- 신고 여부에 대하여 (피해)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한다.
- 상담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관련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 내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2015)]

2. 대학 상담 장면에서 인지한 내담자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

가. 성희롱·성폭력 개념 이해하기

포괄적 의미에서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권리,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법적인 면에서의 성폭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다. 대학의 규정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성폭력 정의를 따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법률적 정의대로 성희롱·성폭력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기에 대학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사건처리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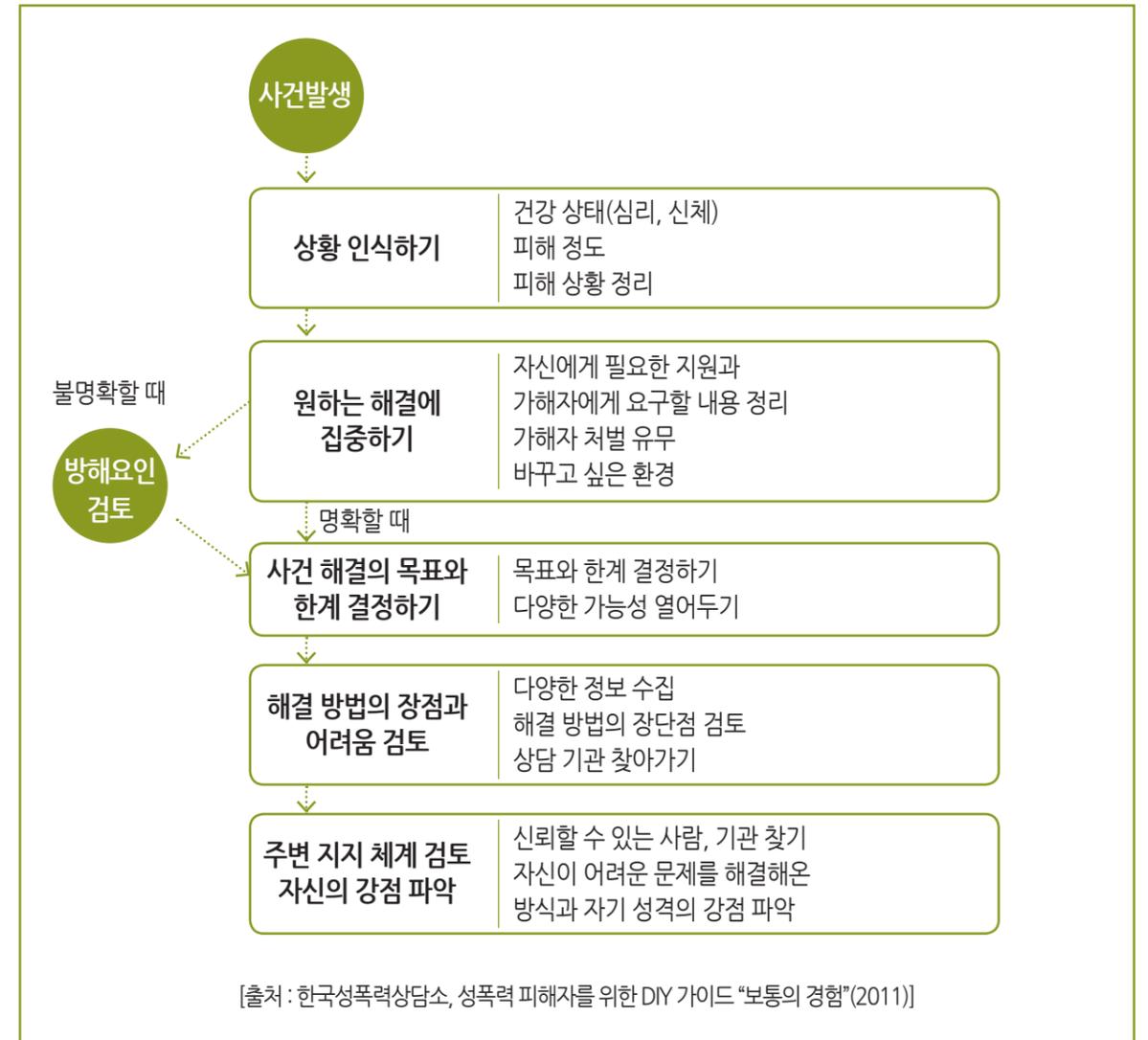
나.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불안, 공포, 불면증, 전신 마비, 대인기피 현상을 경험하거나 과거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공황발작, 우울증, 수면장애와 악몽,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느끼는 등 신체적 피해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응혁·김상훈, 젠더 폭력의 이해와 대응, 박영사, 2018). 대학 내 사건의 경우,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 영향 외에 학업 지속의 어려움, 대인 관계에서의 신뢰 상실 등 대학 생활 자체를 위협받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로 인한 영향은 측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으며, 때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등의 위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 상담사의 민감성과 위기개입에 대한 심리적·실제적 면에서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담자에 대한 기본 개입

가. 사건 해결 지도에 따라 원하는 해결 방향 파악하기(1단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내용이 명확하고 신고 의사를 분명하게 하는 내담자도 있지만, 신고해도 되는 사건일지 아닐지,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지, 내담자 본인이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고민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상담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우선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내담자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원하는 처리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즉각적인 사건처리를 원하는 경우, 사건처리를 원하지만 망설이는 경우, 처리를 원하지 않고 심리적 조력만 원하는 경우,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경우 등 내담자의 요구와 상태는 다양할 수 있다. 내담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한 번의 면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필요시 바로 외부 의료 기관인 지원 기관으로의 연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자의 경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부터 시작해 한 단계씩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사례 개념화하고 개입 및 연계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담 과정에서는 각 사건 해결 방식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사건 해결 방식의 장단점 비교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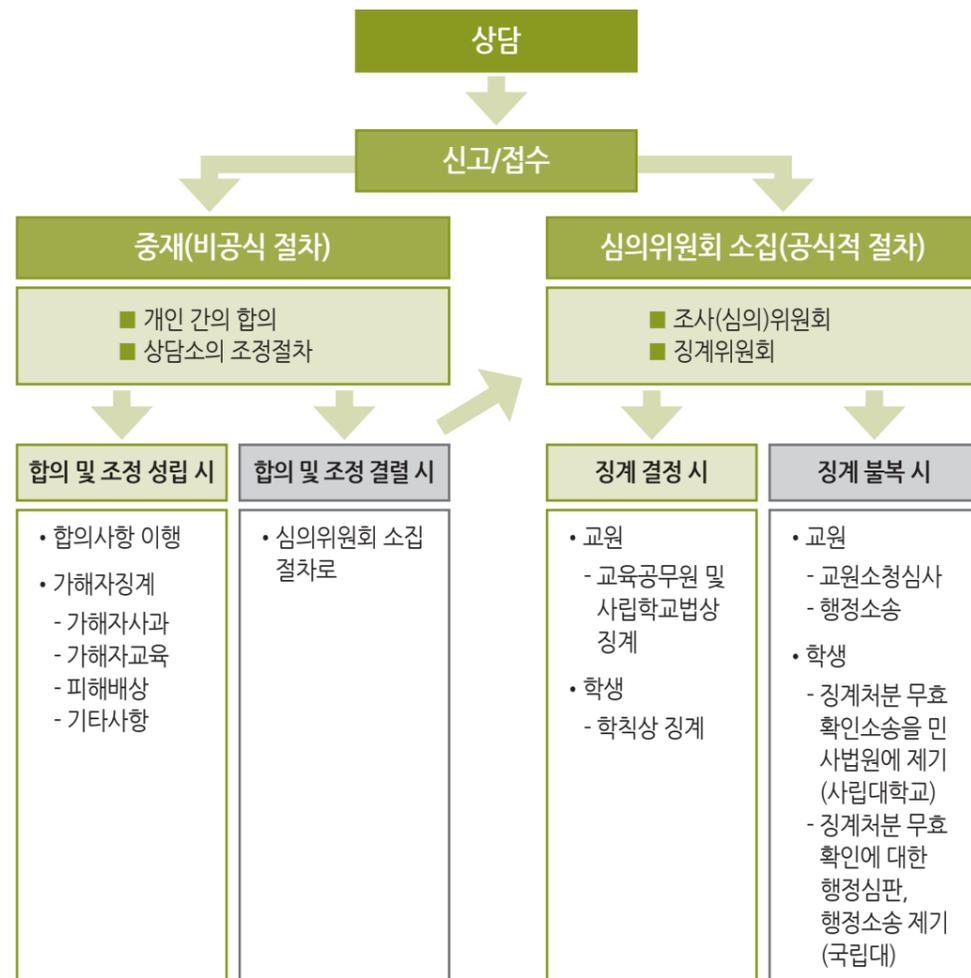
구분	내용	
소속집단 해결 (담당기구, 여학생회, 대책위원회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해결을 원할 때 힘이 된다. - 개인적 해결에 견줘 좀 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요구 사항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성폭력 방치하는 소속 집단의 문화, 방조-묵인한 사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2차 피해 문제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가 소속 집단에서 나가버릴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돼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 가해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집단 내 다른 갈등이나 문제와 연루돼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법적 해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안도감 들 수 있다. - 소속 집단 문제 해결 시 도움·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시키고,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해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른다. - 과도한 합의 증용에 시달릴 수 있다. -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 - 민사 승소해도 손해 배상액 적게 책정되거나 가해자 변제 능력이 없을 시 못 받을 수도 있다. -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좌절감이 들 수 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보통의 경험”(2011)]

나. 설정한 방향에 따른 사건 해결 (2단계)

1) 소속 집단에서의 해결 : 대학 내 규정에 따른 사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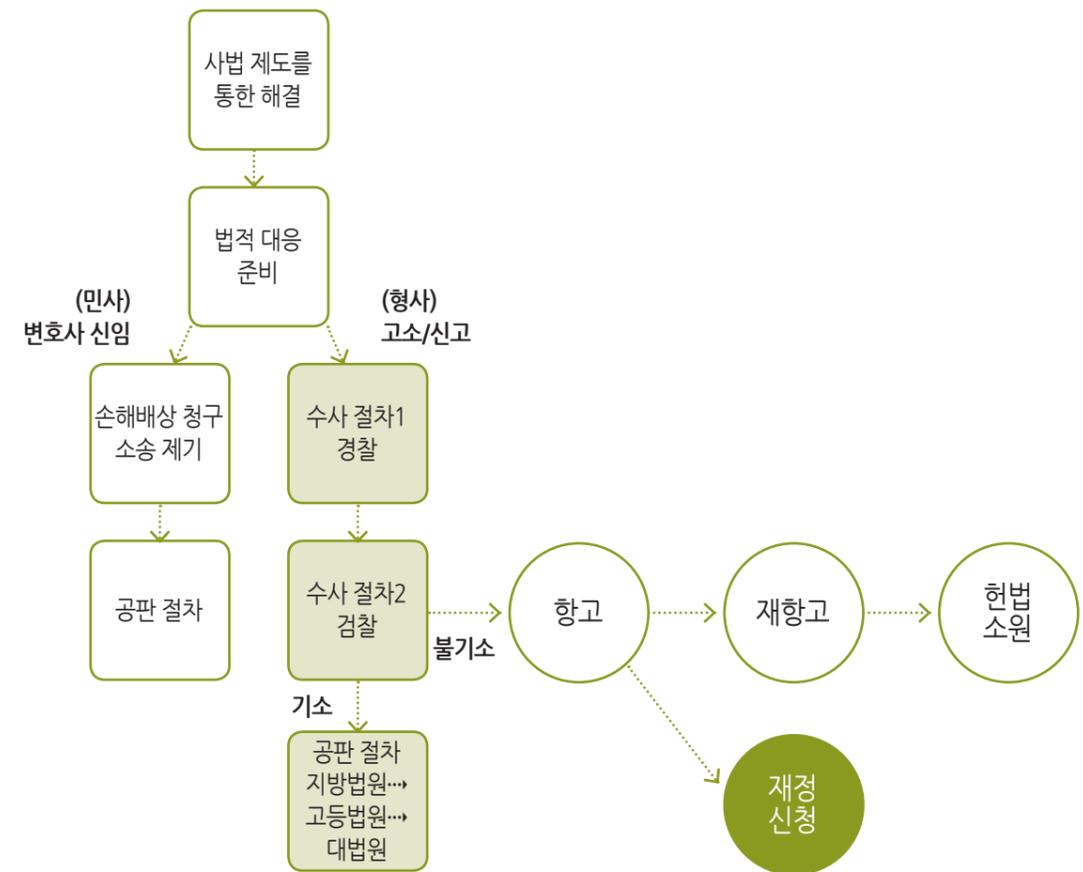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2018)]

내담자가 소속 집단인 대학 내 사건 처리 담당 기구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상담사는 교내 사건처리 과정을 파악하고 심리상담과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가 분리된 기관의 경우 내담자를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구성원(상담사)이 인지한 사건이므로 상담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심리상담과 사건처리를 겸해서 하는 조직의 경우 심리상담을 하는 상담사와 사건처리를 하는 상담사가 분리되어 상담을 실시한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행위자 면담과 위원회 업무 등을 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피해자 심리상담과 사건처리를 동시에 하는 경우, 때로 행위자로부터 불공정한 사건처리라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대학의 사정상, 두 기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자서 심리상담과 사건처리를 모두 해야 하는 상담사가 많은데, 이 경우 사건처리 과정 중 심리상담을 일시 중단하거나 외부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부 기관 : 사법 제도를 통한 해결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보통의 경험”(2011)]

사법 제도를 통한 해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해결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수사 과정에서 내담자가 힘을 갖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법에 따라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조사받고, 재판 출석 시에도 비공개 신청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4.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위기 개입

가. 성폭력 역고소 피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때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사건을 종종 언론에서 보게 되며, 실제 대학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내담자는 1차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치유되지 않은 채, 2차 역고소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에 상담사는 내담자가 어떠한 역고소에 휘말리더라도 스스로가 당당한 피해자임을 잊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즉시 바로 신고할 것이다. - 신고 시, 극도로 흥분하고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 범죄의 대상이 될 만한 젊고 매력적인 여성일 것이다. - 과거 어떠한 범죄와도 관련된 적 없을 것이다. - 경찰 수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다. - 피해 당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폭력 피해자의 경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회와 두려움, 자책감으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 - 평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체형, 외모 특성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과거의 행적이 피해자를 의심하는데 악용되어선 안 된다. - 경찰이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피해자도 경찰을 불신할 수 있다. -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이거나, 가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동의하에 술을 먹거나 숙박업소에 갔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7]

나. 역고소 유형

1) 무고죄

- (근거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예훼손(근거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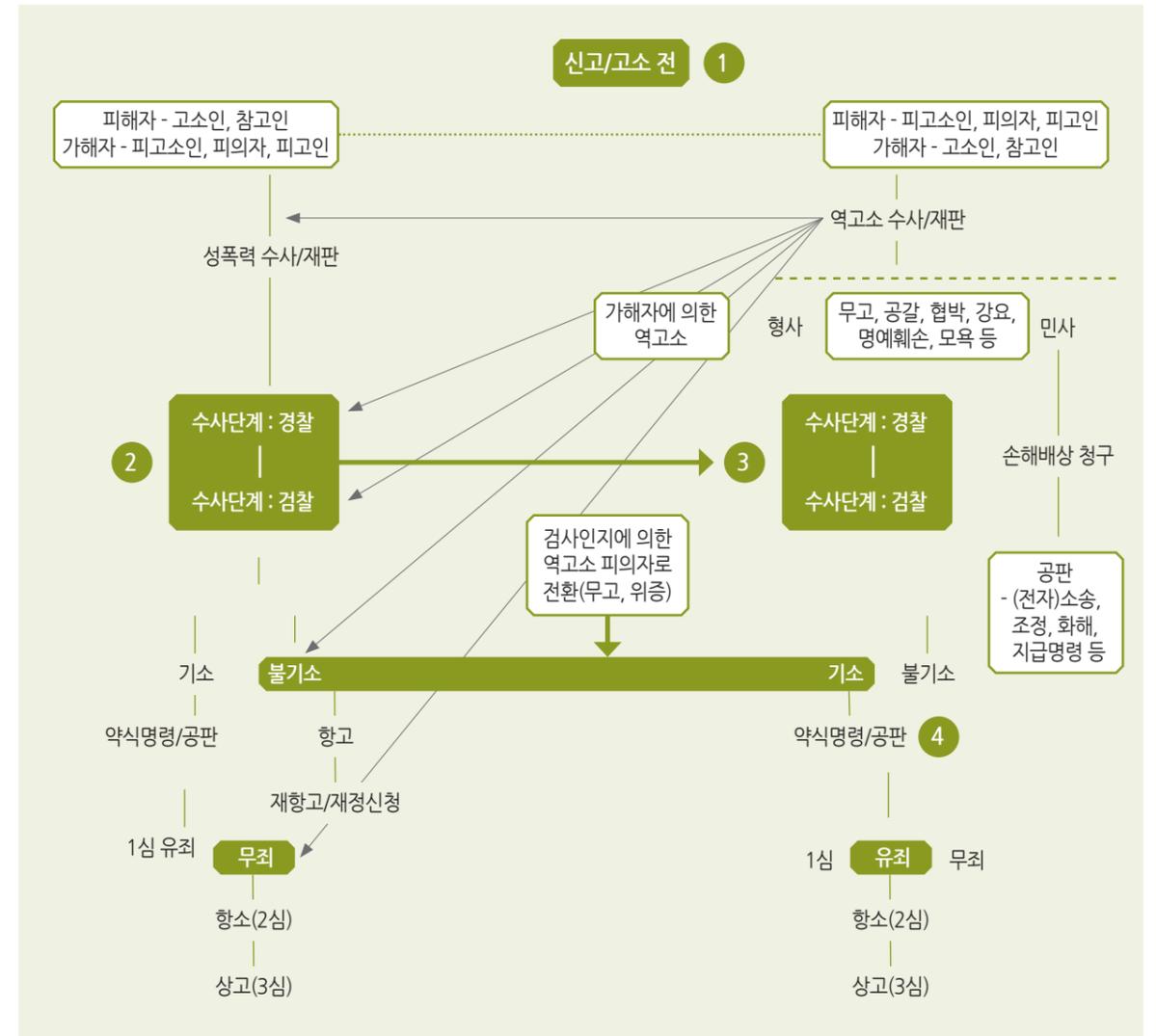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역고소 유형

- 위증죄, 협박죄, 모욕죄, 공갈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대응방법 생각해보기]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7]

다.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자살 위기에 대해 개입하기

피해 내담자가 해결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고 원하는 처리 방식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사건처리의 종결과 함께 상담이 종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의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감, 피해로 인한 외상, 심리적 취약성의 동반, 역고소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상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장기적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때로 자살 위기에 있는 내담자를 만나게 된다. 이때 상담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 역시 상당하다. 이에 내담자의 자살 위기 신호를 조기에 알아채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살 위험성 알아차리기

언어적인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고 싶다' 등의 직접적 의사표현 · '사는 게 지겹다', '살아갈 힘이 없다', '사는 게 무의미하다' 등 간접적 의사표현
행동적인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갖고 있거나 유서를 씀 · 평소 아끼던 물건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기, 무단결석 등의 돌출적인 행동을 보임
기타 의사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두운 표정과 대인관계 회피, 좋아하던 일에 흥미 감소 · 잦은 지각이나 결석 등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움 · 불면증, 식욕저하, 체중감소 등의 변화

[출처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자살예방 및 개입을 위한 안내서, 2011]

2) 자살 위기 개입자가 명심해야 할 사항들

-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유지하라
- 도움을 청한 것이 옳았다고 느끼게 하라
- 자살 단서에 주목하라
- 경청하라, 공감하라
- 반드시 질문하라
- 개입 시 거짓말을 하지 마라
-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라
- 비밀보장 때문에 자살 생각을 비밀로 하지 마라
- 너무 빠르게 개입을 종결하지 마라
- 이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고 평가하도록 하라
- 기록으로 남겨라
-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자살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확신시켜라
- 혼자 해결하지 마라, 팀을 이루도록 하라
-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 안전계획 동의서를 만들어라
- 사후관리를 잊지 마라

[출처 : 육성필 · 조윤정, 자살 위기의 이해와 개입, 박영스토리, 2019]

3) 자살 위기 지원 외부 기관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www.suicide.or.kr
☎ 02-3459-1000, 마음이음 상담전화(24시간 Hot-line) : 1577-0199
- 서울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 블루터치 : blutouch.net
☎ 02-3444-9934, 교사 상담전화 스쿨라인 1577-7018
- 생명의 전화 24시간 Hot-line
☎ 1588-9191 홈페이지 : www.lifeline.or.kr

위기는 위험스럽고 힘든 고통을 주는 과정이지만,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위기에 대해 가능한 개입을 함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내담자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담자 역시 충분한 자기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 피해자 지원 기관]

구분	지원 내용	연락처 및 정보 찾기
해바라기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위기지원형 : 365일 24시간, 의료법률, 법률, 수사지원제공 - 아동-청소년형 : 만 19세 미만, 월-금 9-6시, 상담과 치료 - 통합형 : 365일 24시간, 위기상황 대응 후 상담과 치료 	전국 기관 안내 (별도 첨부)
여성긴급전화 1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 여성에게 전화로 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초기지원 기관 - 긴급상담 - 보호 : 긴급 피난처 운영 임시보호(*최대 7일간 숙식제공, 데이트폭력 피해자 최대 30일 보호) - 기타 기관(의료, 법률, 수사, 상담 등) 연계 	전화상담 : 1366 온라인 채팅, 게시판상담 : www.woman1366.kr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친구찾기 '1366' 검색 → 플러스친구에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an1366) 친구추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활동과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 피해자 및 가족 지속 상담 - 수사, 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 조사, 법원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신청 - 기타 기관(의료, 법률, 돌봄비용, 보호시설 등) 연계 	전국 170개 운영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검색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차적인 의료지원을 제공,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 최소화-법의학적 증거확보에 기여하고자 지정된 의료기관 - 의료 : 응급키트(사건후 72시간 이내) 증거물 채취, 산부인과-정신건강 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 의료진 무료 진료 - 상담 : 심리평가 및 치료(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전국 334개 전담의료기관 지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전담의료기관" 검색

보호시설	- 신변보호, 위급상황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 및 치료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지역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설치된 비공개 시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상담, 수사-재판절차 지원,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자립-자활 지원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보호시설 퇴소시 숙식제공 및 보호, 직업 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전국 31개소 운영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입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 - 상담, 삭제지원, 수사, 법률, 기타 연계	전화상담 :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상담 : https://www.women1366.kr/stopds/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피해상담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의료-법률지원기관 또는 보호시설 연계	여성이족부 홈페이지 ... 정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 진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	여성이족부 홈페이지 ... 정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 즉시 보호 지원 - 여성경찰관의 단기간 신변보호 - 사건처리절차 상담, 시설 연계 - 귀가 후 call-back 등 사후 관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에 의한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 -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간병비, 학자금지원 -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 법률자문, 재판모니터링, 재판동행 - 주거환경 개선	전화상담 : 1577-1295 www.kcva.or.kr
스마일센터	강력범죄 피해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회복을 지원 -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임시주거시설 지원 - 법률상담, 소송구조, 전문가소견서, 재판모니터링	www.resmile.or.kr
정신건강 복지센터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회복 지원 - 사례관리 - 자살위기 개입 -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회복지원 -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전화상담 : 1577-0199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관한 안내서, 2019]

[전국 해바라기 센터 연락처]

센터명	소재지	위탁병원	연락처	센터명	소재지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동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경찰병원	02-3400-1117	경기 서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182 한도병원 별관 3층	한도병원	031-364-8117
서울 남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보라매 병원	02-870-1700	경기 남부 (거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아주대 병원	031-215-1117
서울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지하 1층	서울대 병원	02-3672-0365	경기 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501호	명지병원	031-816-1375
서울 (아동)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 의료원	02-3274-1375	경기 (아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 차병원	031-708-1375
부산 동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부산 의료원	051-501-9117	강원 서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 2층	강원대 병원	033-252-1375 033-243-8117
부산 서부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병원 지하1층	동아대 병원	051-244-1375 051-805-0117	강원 동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지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릉 동인병원	033-652-9843
대구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대구 의료원	053-556-8117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 의료원	043-272-7117
대구 (아동)	대구 중구 동덕로 125 5층	경북대 병원	053-421-1375	충북 (아동)	충북 청주시 봉현로 222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인천 동부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 의료원	032-582-1170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병원 1층	단국대 병원	041-567-7117
인천 북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032-280-5678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전북대 병원	063-278-0117
인천 (아동)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전북 (아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전북대 병원	063-246-1375
광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병원 2층	조선대 병원	062-225-3117	전남 동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성가롤로병원 별관	성가롤로 병원	061-727-0117
광주 (아동)	광주 동구 재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 병원	062-232-1375	전남 서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 5층	목포중앙 병원	061-285-1172 061-285-1375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본관 2층	충남대 병원	042-280-8436	경북 북부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안동 의료원	054-843-1117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울산병원	052-265-1375	경북 동부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선린병원 5층	선린병원	054-245-5933 054-245-5949
경기 북동부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의정부 의료원	031-874-3117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 대로 231 마산의료원 별관 2층	마산 의료원	055-245-8117
				경남 (아동)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병원 본관 지하 1층	경상대 병원	055-754-1375
				제주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한라병원 2층	한라병원	064-749-5117

라. 기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구분	지원 내용	연락처
무료 법률지원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민사 소송,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변호 지원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 제공 * 모든 성폭력범죄피해자(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지원	해바라기 센터 검찰청 피해지원실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12)
가명조서	-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해바라기 센터 검찰청 피해 지원실 (국번없이 1301)
신변안전조치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청 피해지원관 또는 관할 경찰서장 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조치 가능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위치 안전 장치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 호출기를 교부하여 위급 시 호출기를 누르면 경찰 출동 지원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긴급복지 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지원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피해자, 신고자, 친족 등에 이사비 지원 *이사 후 소요된 비용 청구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피해자 보호시설	- 중대범죄 신고자 혹은 범죄 피해자, 증인, 친족 등이 보복이 우려되어 신변의 안전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국번없이 1301)
앱: 안심이 (서울시)	-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39,463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하는 24시간 여성 안심 서비스 앱 - 위급상황 긴급신고 - 나홀로 귀가 시 안심귀가 모니터링 -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모바일에서 '서울시 안심이' 검색 후 다운로드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2019]

참고 자료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자살예방 및 개입을 위한 안내서. 2011.

육성필 · 조윤정, 자살 위기의 이해와 개입, 박영스토리. 2019.

장응혁 · 김상훈, 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 박영사. 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대학 성희롱 고충 상담원 연수 과정. 2012.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2015.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보통의 경험”.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서,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20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피해내담자와 치유회복 상담 유의점

고 경 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학생상담센터 객원연구원)

03

목 차

1. 성폭력 피해 내담자의 심리상태 이해하기
2. 피해내담자와 신뢰관계 형성하기/그 과정에서의 유의점
3. 피해내담자의 심리평가
4. 피해내담자의 피해회피와 양가감정이 있을 때 유의점
5. 피해로 인한 영향력 확인과 회복 과정에서의 유의점
6. 피해회복 유지와 성장을 돕기
7. 상담자의 이차 외상 대비하기

상담자로서 피해내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여겨진다. 하나는 바로 성폭력 관련 문제를 주호소로 하여 내방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 도중에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이다. 대부분의 사건처리 과정이나 이후에 진행되는 심리상담에서는 성폭력 피해 회복이 주요한 문제로 시작되지만, 또 다른 문제로 상담 중에도 성폭력 피해 관련 이슈는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심리상담에서 도중에 성피해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이야기를 해도 좋다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미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상처받았던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꺼내서 이야기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상담장면에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다룰 경우에, 피해내담자는 엄청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혼자만이 알았던 비밀을 상담자와 공유할 수도 있고, 이제껏 자기편이 없다고 느껴며 살아왔다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숨어있는 분노를 꺼내서 표출하면서 자기만의 힘을 재확인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 후유증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을 다시 열고 자신을, 타인을 다시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 무력감에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상담자와의 진정한 존중과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수용이 아닌 의심과 비난이 개입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자(정신과 의사, 기타 상담자들)와의 관계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담자는 치유의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되살리게 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좀 더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 글은 상담자가 성폭력 피해내담자를 상담하고 그 회복을 돕는 과정 중에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1. 성폭력 피해 내담자의 심리상태 이해하기

가. 피해내담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상태

1) 당혹감, 혼란스러움

-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남의 일 인줄만 알았는데...'
-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 '내가 뭘 잘못했나? 난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 '무언가 한참 잘못된 거 같은데'
-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 '그 사람은 분명히 내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지, 휴학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2) 수치심

- '내가 성폭력을 당한 것을 알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 '난 이미 더러워진 존재 아닌가?'
-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이것을 없앨 방법이 없다'

3) 공포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 이리다가 여기서 갇히는 거 아니야?’
- ‘그 때 머리를 벽돌로 맞았을 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다, 무섭다’

4)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자신없음

-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난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같지 않다’
- ‘자꾸 내 처지가 비참해진다’
-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 자책

- ‘그 일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 ‘내 문제인가?’

6) 분노

-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민다’
- ‘그 사람을 믿고 좋아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 ‘왜 하필 나란 말이야’

7) 무력감

- ‘난 그 때 내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지 처음 알았어요’
-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어’
- ‘집중도 안 되고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 같다’

8) 벗어나고 싶음

- ‘그가 있는 이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 ‘그 일이 일어났던 이 직장을 떠나고 싶다’
- ‘지금 이 상황에서 사라지고 싶다’

9) 자기파괴적 사고/행동

- 때로 피해내담자들은 그러한 일을 당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을 해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 자살시도를 하거나, 성적 위험행동을 하거나, 알콜에 의지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 또는 화가 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 폭식을 하였다가, 도로 다 토해내기도 한다.

10) 부인하고 싶은 마음

- ‘난 성폭력을 당한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야’
- ‘만약 그 사람을 사귀게 되면 난 피해를 당한 게 아닌 게 되지 않을까’
- ‘그 사람도 내가 좋아서 이런 일을 벌인 걸 수도 있어. 이건 성폭력이 아니야’

11) 피해내담자가 갖는 심리상태 이해과정에서의 유의점

- 피해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속단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내담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태를 보일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정도는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또한 비슷한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피해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 외적 자원과 자아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한두 가지의 감정을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모호하게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미리 피해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쉽게 짐작하고 단정하는 식의 반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 상황에서 어떤 내담자는 ‘수치심’을 주로 느꼈다면, 어떤 내담자는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또 다른 내담자는 ‘불쾌감’ 수준이라면, 어떤 내담자는 ‘화’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 상담자가 만나는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어떤 심리상태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비언어적 태도와 언어적 반응에 조율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심리는 복합적일 수 있기에, 어떤 심리도 소외시키지 말고, 다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마음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버거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은 상담자에게 말하기 쉽지만, 어떤 감정은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담자가 개방적인 자세와 무엇이든지 다 말해도 좋다는 안전한 환경제공이 중요하다. 즉 ‘어떤 마음상태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세로 상담자가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피해내담자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씩 개방하게 되어, 그것들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상담자가 어떤 감정에는 수용적이지만, 어떤 부분에는 배타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면, 피해내담자는 자기 안에 있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파편화시킨 채로 ‘거짓’ 회복을 가장하며 상담을 종료할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 심리는 변동적일 수 있기에, 직면한 감정 이면의 감정의 존재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감정과 심리는 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수치심에 의해 잘 표현하기 어려워할 수 있고, 이후에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자신이 못나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담적 개입을 통해 점차 자신을 이해하고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이전의 긍정적인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자신이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마치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거 같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상담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이후에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관계의 상실이라는 슬픔을 가장 크게 느낄 수도 있다. 피해회복에는 이렇듯 여러 가지 층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피해내담자가 지금은 어떤 마음이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를 다루면서도, 또 이면에 어떤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태

1) 두려움

- ‘그 사람이 또 다시 내게 어떻게 할지 몰라 겁이 난다’
- ‘그 사람이 보복할까봐 두렵다’
- ‘자기 잘못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겁이 난다’

2) 분노

- ‘나만 당하지 않겠다, 그 사람도 반드시 고통을 겪어봐야 해’
-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어’
- ‘그 사람은 죽어야만 해’

3) 원망, 미움

-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지?’
- ‘우리의 관계를 배신한 그 사람이 밉다’

4) 피해내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심리상태 이해과정에서의 유의점

- **가해자와의 이전관계에 대한 탐색이 주요할 수 있다.**

피해내담자의 가해자에 대한 마음은 그 사람과 이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이 이후에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도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 대한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관계부터 파악해야 하고, 그것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 **친밀하거나 믿었던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는 더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을 수 있다.**

피해 당시, 또는 그 후의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피해이전에 믿었던 관계라면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내담자가 보이는 감정을 너무 단선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 하나에 접촉하되, 또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럴 땐 특히 상담자가 피해내담자보다 더 크게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자칫 다른 감정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 보호자/가까운 사람에 대한 심리상태

1)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지? 난 분명히 당했는데’
- ‘내 말보다 가해자 말을 더 믿는 엄마가 밉고 원망스럽다’

2) 공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미움

-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엄마가 밉다’
- ‘재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도 몰라서 불안해 죽겠는데, 언니는 그저 세상이 그럴 수도 있지 말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3)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한 소외감, 외로움

- ‘당한 건 나인데, 왜 가해자 인생을 걱정하지? 도대체 우리 엄마 맞나?’
-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가해자 부모와 만나라고 하지?’
- ‘피해를 당한 건 나인데, 아빠는 나를 나무랬다,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냐고’

4) 피해내담자가 보호자/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심리상태 이해과정에서의 유의점

- **가해자에 대한 감정보다 더 클 수 있음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많은 피해내담자가 가해자보다 가해자편을 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분노나 절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 미성년인데 부모가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는 심지어 ‘버림받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자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게 미성년인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꼭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당한 피해내담자에게 그 부모가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또는 ‘너가 ~~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에, 이들은 마치 사막에 홀로 떨어진 것과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피해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무시당할 때, 이들은 극심한 소외감이나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는 가해자에게 느끼는 분노이상의 고통스러운 상처일 수 있다. 그렇기에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피해내담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피해내담자는 그로 인해 어떤 마음이 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성폭력피해내담자의 피해 이전이나 이후에 애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의 영향력에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이전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이었거나 피해이후에 피해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은 극복하기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이전이나 이후에 보호자/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내담자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과 돌봄이 적었던 경우에는, 피해내담자는 이 성폭력피해에 대한 그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애착관계의 돌봄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상담자는 피해내담자가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고, 당장은 상담자 자신이 피해내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사람이

되어 주는 게 필요하다.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후유증을 약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더 어렵고 긴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라. 세상에 대한 심리상태

1) 불신, 의심

- ‘나는 아무도 믿지 못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 ‘이 세상에 믿을만한 남자는 아무도 없어’
- ‘과연 이 선생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줄까?’

2) 분노

- ‘법조차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다니, 세상에 정의는 죽었다’
- ‘법보다 내가 직접 징계해주는 게 낫겠어’

3) 그나마 다행

-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주니까 제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은 거 같아서 다행이네요”
-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4) 피해내담자가 세상에 대한 심리상태 이해과정에서의 유의점

- **상담자에게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을 투사할 수 있다.**

상담자는 피해내담자가 이전의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반응하도록 허용하기에, 피해내담자로부터 어떤 감정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때로는 큰 잘못이 없어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가 억울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충분히 들을 준비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존재해도 상대방은 자기 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고 끄꿍 싸매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성폭력 피해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로 인해 받은 상처(가해자나 자신을 믿지 않는 부모에게 받은)로 인한 불신이나 화 등을 상담자에게 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의 작은 실수에도 피해내담자는 크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럴 수 있음’을 예견하고, 만약 그런 경우에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서서히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담자를 통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상담자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자와의 새로운 경험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도와줄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하다. 어쩌면 상담자는 피해내담자가 세상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도 수용 받을 수 있기에 진정으로 신뢰할만한 첫 번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피해내담자를 위해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마.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당면 과제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성폭력 피해로 인해, 불안, 우울, 혼란스러움, 분노,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겪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힘든데다가, 당면 과제를 어렵게 하여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녀야 하고,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또는 과거의 피해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당면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충동조절이 어려워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 당면 과제 수행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부모가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또는 아예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말도 못하고 과제 수행도 못하여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고 감내하기도 할 수도 있다.

- 상담자는 피해내담자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어진 당면과제 수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피해내담자와 신뢰관계 형성하기/그 과정에서의 유의점

가. 상담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성폭력은 진위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지에 대해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기 쉽다.
-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내 잘못이라고 하면 어쩌지?’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창피해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럴수록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야기하기 편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특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경우에,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기 어려워할 수 있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수용해주면서, 신뢰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예) 피해내담자가 신뢰하는 사람과 상의하여, 피해내담자가 상담에 협조적일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 그래서 피해내담자를 상담실까지 데려다 주거나 동석하도록 하기.

나.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

1) 경청과 존중

- 내담자의 말과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다.
- 선부른 판단보다는, 모르면 질문하여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2) 상처받아 예민해진 상태를 존중해주기

- 피해를 받은 후에는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상담자의 단어사용과 말투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이는 화상으로 잔뜩 부어오른 팔은 살짝만 스쳐도 아프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조율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다. 상담자가 구세주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자칫 내담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내담자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까지 상담자가 하려든다면, 내담자의 힘을 빼앗거나 의존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할 일은 내담자가 하도록 두고, 스스로 자신이 조절해서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내담자가 패해 경험에서 어떤 심리일지에 대해서, 지레짐작해서 먼저 알아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보다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스스로 말하도록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피해내담자의 심리평가

가. 심리검사 실시/면접

- 객관적, 또는 투사적 검사 실시(MMPI, 문장완성검사, HTP 등).
- 면접을 통한 확인.

나. 피해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 파악

- 해석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두드러진 증상 파악.
- 수면, 식이상태 등 확인.
- 자기파괴적 행동이나 신체생리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

- 가족관계 상태 파악.
- 대인관계 상태 확인.
-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정서상태 확인.
- 당면 과제 수행 능력 평가, 자아기능의 정도 확인.

다. 평가 시 유의점

- **현재의 자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내담자가 현재 경험하는 혼란정도와 심리적인 강도 등을 제대로 평가하여야, 상담자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즉 현실검증력과 현실감각, 그리고 판단력, 타인과 친밀한 관계 유지 능력, 감정이나 불안에 대한 견디고 관리하는 능력, 충동조절 능력, 자기에 대해 적절한 평가, 사용하는 방어의 수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은 이후 도움의 전략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당면과제 수행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이후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우선순위 대해 말해줄 수 있다.
- **숨겨진 힘, 긍정적인 자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내담자가 피해 상황이후에 온 경우에는, 그 때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그 때는 피해내담자로서는 가장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때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상담자는 희망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상황은 피해내담자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한 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면들을 탐색하여 내담자의 긍정적인 자원과 힘을 모으려고 해야 회복상담을 진행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다.

4. 피해내담자의 피해회피와 양가감정이 있을 때 유의점

가. 피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담자가 회피하고 싶어할 때

-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괴로워서 고통을 피하려고 상담에 오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마음에 대해 묻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준다.
- 내담자가 상담에서 그것 말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상담자가 부드럽게 화제를 다른 분야로 돌려서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한다.
예) 그런데 00씨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두게 되었나요? 라고 하여, 도와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내담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 다시 기회를 봐서, 치유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피해내담자가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지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며, 동시에 지금 힘든 부분을 덮고 가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상담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에 대해 내담자와 합의하고,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 양가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 피해 이전에 가해자와 친했었다면, 피해내담자는 가해자에 대해 배신감과 화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과거 관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 등의 양가감정으로 힘들어 할 수 있다.
- 상담자는 피해내담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함부로 가해자에 대해 속단하기보다, 어떤 마음인지 하나씩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는지 질문하여,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이야기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만약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양가감정이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너무 밉기도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낱아주고 키워준 부분이 있기에, 어떻게 감정을 정리할지 어려워하게 된다.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려 노력하면서, 상담자가 미리 좋고-나쁨으로 분열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담자가 미리 그렇게 단정지어버리면, 내담자는 나머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워해서, 그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피해로 인한 영향력 확인과 회복 과정에서의 유의점

가. 피해로 인한 영향력 확인하기

-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지만, 또한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 내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 상담자로서 그것이 어떻게 힘들고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며, 그것이 어느 만큼 중요한 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어떤 사람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신이 그 범지에 동조했다'고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내 몸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남자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 혼자만이 섬처럼 떨어져 존재하는 지독한 소외감'에 떨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내담자가 피해를 이야기할 때, 상담자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로 인해 무슨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현재의 피해내담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명확해야 그 피해내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나. 자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 많은 피해내담자가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왔다. 미투 이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를 당하고, 몇 년의 상담을 받고, 재판에서 이겨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다시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올라오는 내담자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데는 익숙한 면이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가해자 중심의 가치관(예, 피해자유발론, 꽃뱀,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라서 여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함 등)이 우세했었고, 지금의 부모세대는 여전히 그 가치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책감은 피해내담자를 무력감에 묶어두고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기에, 피해내담자가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한다.

다.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돕기

- 가해의 책임에 대한 정리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될 때, 피해내담자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을 학교나 법원같은 기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 간혹 법이나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내담자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담자는 대비하고 있는 게 좋다.
- 간혹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피해내담자에게 용서나 이해,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 피해내담자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또는 엄마의 태도가 피해내담자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자녀는 가족 안에서 마음을 돌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할 수 있다.

라. 애도하는 것을 허용해주기

- 애도하기는 피해의 탓이 피해내담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될 때, 그 때서야 자책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내담자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동으로 인해 그 이전의 좋은 관계를 상실한 것에 대해 깊이 슬퍼할 수 있다.
- 또는 피해내담자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다. 사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닌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증명하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느라 고생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온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애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 분노의 방향이 제대로 가도록 돕기

- 피해내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가해자에게 돌릴 수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 가해자에게 분노할 수 있을 때, 피해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태도를 멈출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공감받고 정당화될 때, 자신에게 향하던 공격성(자해, 폭식 등)을 멈출 수 있다.
- 분노에 대한 안전한 표출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피해내담자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직접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사과문을 받거나 법적처리과정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엄청난 화가 존재하고 이는 이성적인 이해로 잘 풀리지 않는다. 그렇기에 피해내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안전하게 꺼내서 표출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화가 난 것을 인정해주는 것과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분노를 표출할 때는 위험할 수 있기에, 상상으로 안전하게 표출하는 것이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때 상담실안에서 상상으로의 분노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의 피해내담자들은 속이 시원함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이후에 가끔 다시 분노가 올라올 때도 그 방법을 사용해보기도 한다.
- 예) 도화지에 가해자 그린 후, 그 위에 크레파스로 화를 표출해보기, 천사 점토로 간단하게 사람처럼 만들어서 가해자라고 한 후, 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기, 또는 쿠션이나 인형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때려보기 등.

바. 자기를 회복하도록 돕기

1) 경계선 지키도록 돕기

- 피해내담자들 중에 자신만의 경계선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사실 조금 불편했는데 다른 사람이 민망하거나 기분 상할까봐 그들을 배려하느라 말하지 않고 미루다가, 나중에 배려해줄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피해에 관한 그 모든 행동의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피해내담자는 이 기회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계선을 지키는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피해내담자들도 많다. 하지만 어떤 피해내담자들은 자신보다 남을 더 우선시하고,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에 더 따르며, 자신의 기분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존중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특히 어려서 부터 부모에게 순종적이거나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중한 감정은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대개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경계선의 개념이 약해서 침범에 취약할 수 있다.
- 피해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들 못지않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남들 기분 못지않게 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되짚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 몸, 내 행동에 대해 내가 주인인식을 갖고 나의 경계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아니요", "싫어"를 거의 못 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상담실에서부터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격려해주어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경계선을 좀 더 탄탄하도록 돕는 게 필요할 것이다.

2) 자기 자신을 회복하도록 돕기

- 자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이 되었다가도 다시 후퇴하여 다시 자기 비난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 시점이 어떤 시점 인지를 파악하여 또 다시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 자신의 감정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서게 한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도 그 이치를 알아서 이해하게 될 때, 자기의 감정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의지하려 들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내담자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감정들이 상담자와 충분히 나눠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다 보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한 타인과의 잘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 남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을 보호하게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하게 반응해 올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타인이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을 잘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지금은 피해내담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서, 피해내담자가 더 이상은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관계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아차리고 보호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내가 세상에 맞추어서 남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피해내담자들이 남들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느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은 외부에 맞추려 노력하지 말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좋다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에서부터 '너가 참아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피해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라도 '그렇게 남을 위해 참지 않아도 된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는 식의 응원이 필요할 것이다.
-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 자신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 명제는 너무 당연하지만 '착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 일 수도 있다. 혹시 피해내담자가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맺으려한다면, 그 이유를 탐색하여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화하고, 그것이 현실가능한 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3) 발달단계에서의 현실 과제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돕기

- 피해내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당면 과제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미루어두었던 경우에, 회복과정은 다시 당면과제로의 집중으로 이어지게 한다. 미루었던 학업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진로탐색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또는 아르바이트나 사회봉사 등의 사회경험을 더 넓히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연애를 하여 친밀한 관계를 다시 맺을 수도 있다.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 흔들렸던 일상을 다시 살고, 현실에서 해야 할 것 또는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회복하고 있다는 표시일 것이다. 자칫 심리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당면과제를 한참을 미루어 둔 경우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상담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을 향상시켜 조금 더 큰 것을 할 용기를 내게 한다.

6. 피해회복 유지와 성장을 돕기

가. 지지체계 형성을 돕기

- 지지체계가 없으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상담이 종결되기 전에 반드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지지체계를 찾도록 돕는다.
- 피해내담자에게 애정은 있으나 피해로 인한 상처를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의 경우에, 부모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내담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 피해내담자가 주변에서 공감을 잘 못 받더라도, 상담자는 피해내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 그리고 피해내담자의 주변 인물이 기대보다 공감을 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피해내담자 탓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공감능력이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보다 너그럽게 관계를 해나갈 수도 있다. 내 마음은 상대방이 날 온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 없는 다른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그래도 비교적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구할 것인지를 정해서 실천해보도록 한다.
- 주변에서 이해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자조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부분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힘을 받을 있도록 안내해줄 수도 있다.

나. 자기 돌봄을 강화하기

- 상담과정에서 배운 자신의 감정을 믿어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현실에서 스스로 해보도록 하고, 종결이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칭찬해주어서 강화해준다.
-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욕구에도 관심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실행해나가는 부분을 독려한다.
- 일상의 스트레스 상황에 접했을 때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나가는 데 돕는다.
예) 일이 잘 안 풀려 기분이 다운 될 때 : 운동을 하여 일단 머리를 식힌다, 맛있는 것을 먹는다, 애기가 잘 통할 거 같은 친구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등.

다. 성장의 동력 신뢰하기

-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대개 자기 자신과 관계, 삶의 가치관에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은 더 강해지고 성숙하였으며, 타인과 더 가까워졌고, 삶이 더 의미있게 되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견뎌낸 피해자들도 물론 그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또한 그 이후의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고, 타인과 세상과 연결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타인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성폭력 피해와 이후의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상담을 통해 회복과정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말하는 피해내담자들이 있다. 지금의 자신은 이전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를 잘 해주고 사랑해 주며, 가족에 대해서도 진짜로 사랑하게 되어,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로 인한 치유과정에서 자신도 너무나 많이 성장하여 현재의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한다.
- 그러므로 피해 그 자체에서만 피해내담자를 바라보려는 태도보다, 보다 크고 넓은 안목으로 피해내담자를 바라보고, 이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7. 상담자의 이차 외상 대비하기

-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를 만나서 작업하는 동안에 상담자 또한 이차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같이 대인간 외상이 큰 경우에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피해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자 또한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기관 내에서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나눌 동료나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서 겪었던 상처들을 알아차리고 느껴주고 떠나보내는 자기만의 방식(명상, 요가, 산책, 목욕 등)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고춘옥, 김봉환(201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의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19(4), 409-431.

권해수(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53-82

김일옥(1997). 성폭력의 피해경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 137-150.

박가람, 정남은(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Helpful Experience): 질적 분석, 2008.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변혜정, 조중신, 김지혜, 권수현, 권해수, 정유석, 김혜정, 현혜순, 정희진, 정유희, 김애라(2005).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채규만(2001). **성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Frazier, P. A., & Berman, M. I. (2008).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sexual assault. *Trauma, recovery, and growth: Pos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sttraumatic stress*, 161-181.

Ⅲ.

「대학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워크숍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13:00 ~ 16:20

장소 : 고려대학교(서울) 국제관 321호

일 정 표

시간(분)	주요 내용
13:00 ~ 13:20(20)	등록
13:20 ~ 13:30(10)	워크숍 과정 소개
13:30 ~ 15:00(90)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 김 진 희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책임연구원·책임상담원)
15:00 ~ 16:00(60)	사건의 2차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 김 예 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16:00 ~ 16:20(20)	종합 정리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김 진 희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책임연구원·책임상담원)

01

1.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란?

1.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 정의

가. 2차 피해의 의미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동료, 주변인, 언론, 여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함.¹⁾
-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일상·학업·업무·대인관계 곤란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주변인·행위 당사자의 말이나 소문 또는 기타 다른 방법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²⁾
-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함.³⁾

1)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 김영희, 김진희, 노정민, 심현정 (2017).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81쪽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항. 2019년 12월 25일 시행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금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 잘못된 사회통념으로 인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우가 많고, 피해양상이 복잡함.

나. 주요 객체별 2차 피해

1) 2차 피해는 피신고인과 주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⁴⁾

피신고인(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침 -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함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피해자 탓하기 - 지도교수 등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 보다 먼저 보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함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 옹호와 두둔 - 사건 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 - 피해자 비난 -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 -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행위자를 화해 시키려 함

2)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다음과 같음

- 사건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
-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임.
-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함.
- 가해 행위자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
-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 간 화해나 합의를 중용함.

3) 이미경(2012)은 성폭력 사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사례를 6가지 범주로 정리하여 인터뷰 참여자에게 가장 자주 겪었던 2차 피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⁵⁾

1.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72회)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54회)
3. 합의 강요(47회)
4.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24회)
5. 철차고지 안내 부족(23회)
6. 반복진술, 신뢰관계인 동석거부, 무고 위협(19회)

다. 2차 피해의 유형

1) 피해자에 대한 공격

-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이 노출되어 평소행실, 학업능력, 성격, 연애관계 등이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에 알려지고, 편견과 왜곡으로 비난받게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학업 수행이나 대학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며, 이후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례⁶⁾

언니들이 그 사람[가해자]의 같은 학번 동기여서 그 언니들한테도 이 얘기를 말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말 계속 나오는 것도 싫었고, 의심 당할 게 제일 싫었어요. '너 저 선배 좋아서 쫓아 다녔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가학하고 학교 다니는 거네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겠네요. 대면하는 것도 안 좋는데 소문까지 도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안 나가서 출[석]F를 많이 맞았어요. '진짜 오늘은 난 쟈 못 보겠다' 하는 날에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학교 [학사경고]를 맞았죠.

2)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에 대한 피해

- 대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대다수가 아는 관계에서 이뤄지므로 사건에 대한 제보자나 참고인 등 제 3자의 행동이 중요함.
 - 이때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주변인에 대하여 행위자 혹은 행위자 주변 제3자들이 험담, 비난, 보복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이 상처를 받는 2차 피해는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들의 사건지원을 어렵게 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함.

사례⁷⁾

[단톡방 멤버였다가 성희롱 내용을 건네 준 남자동기에 대해 언급] 그 친구가 되게 걱정해요... 전 되게 고맙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은혜 갚는 마음으로 '복학하면 내가 많이 놀아줄게'라고 이야기 하죠... 저희가 학교에 요구했던 것도 이런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인데]. 그 친구가 걱정이 많죠.

4) 김영희, 김진희, 노정민, 심현정 (2017).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82-83쪽

5)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6) 이미정, 윤덕경, 정지연, 김정혜, 정수연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 교육부, 정책보고서, 132-133쪽 (사례5, 대학원생)

7) 6과 동일, 133쪽(사례2, 학부생)

라. 2차 피해 관련 개념

1) 피해자 유발론⁸⁾

-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대표적인 2차 피해에 해당함(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니?/그 밤에 왜 나갔니?).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등을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 마디, 표정 하나에도 민감해지면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됨.

2) 2차 가해

(1) 2차 가해의 개념⁹⁾

- 2차 피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통념이나 인식의 성찰 없이 판단하거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객관성'으로 포장한 가부장적 시선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됨.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에서는 이를 규정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주로 행위자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 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 제2조

: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행동 또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금속노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2조

: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 vs. 2차 가해¹⁰⁾

- '2차 피해'라는 개념은 어떤 사회적 통념들이 강간 문화를 정당화하고 특권을 강화시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2차 가해'라는 말은 누가 가해자인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집중하도록 함. '2차 가해'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향유하는 강간 문화의 문제를 구체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실행되는 문제로 특정하는 힘을 가짐. "강간 문화가 문제야"라고 할 때보다 "네가 바로 문제야"라고 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규제의 효과를 발생시킴.
- '2차 가해' 용어 사용의 지양 필요성 대두 : 이 용어로 인해 1차 피해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고, 정작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고립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임.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그 과정에서 정의 관철을 위해 피해자도 노력이 필요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절차로서의 조사가 필요할 때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조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후 논의를 막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그런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해자'라고 지목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음.

8) 노정민, 김현정, 이경희 (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함

9) 조지영 (2011). 민주노총 내 성폭력 사건의 논쟁지점과 그로 인한 사건 해결의 문제점,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 2006~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토론문(2011. 11. 8.)에서 발췌함

10) 권김현영 (2017).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발제문(2107. 5. 15)에서 참조

2.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 관련 규정 현황

가. A대학 성평등상담실 규정

- 제2조 ⑧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 ②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대책위원회는 가중 징계요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나. B대학 인권센터 규정

- 제2조 ⑥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22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가중조치 및 가중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다. C대학 성평등센터 규정

- 제2조 ④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20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가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해당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라. D대학 인권센터 규정

- 제22조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2.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한 행위 3.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와 대책위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신고인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II.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양상

1. 사건처리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 사건을 알리는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외부에 사건을 알리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피해를 드러내기 이전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지만, 모든 피해자가 지지받는 것은 아님.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은 행위자보다 피해자의 행실 또는 평소 언행을 문제 삼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기관(학교, 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므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것을 중용하는 것도 2차 피해임.**

나. 접수 및 상담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함. 이는 위계에 의해 나타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특성 상 누군가 알고 있거나,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합의 중용** 등의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임. 이때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기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모든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며, 특히 **사건처리 담당자**는 학내 구성원과 해당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사건처리과정에서 **우연히 사건을 알게 된 학내 구성원**이 있다면 비밀보호 서약서 등에 서명을 요청하고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것도 방법임.
-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에게 비밀보호의 의무란 본인이 아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함구의 의미가 아님. 피해자를 지지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려운 절차에 동행해주는 등 주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소문을 내지 않도록 비밀보호에 힘써달라는 뜻임.
- 담당자는 접수 및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 즉 2차 피해의 두려움을 탐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할 수 있음.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를 당부함.

다. 조사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조사과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행위자 조사를 진행함. 이후 피해자와 행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어짐.
- 피해자, 행위자 조사는 **반드시 별도의 장소/시간**에 이뤄져야 함. 피해자가 행위자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마주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피해자와 행위자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함.
- 피해자에게 공격적 표현,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립적 표현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와 신뢰감을 쌓는데 도움이 됨.

라. 심의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심의위원회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나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비를 고려하고,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권장함.
-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위원들의 성 인권 의식**은 사건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위원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통념과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사건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함.
- 심의위원에게 비밀유지 및 2차 피해유발행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서약서 서명을 요청함.

마. 징계 및 후속조치 단계에서의 2차 피해

- **사건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는 늘어날 수 있음.
- 가해자 인권을 이유로 **징계 정도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작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함. 징계결정에 대해 통보받지 못하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심 청구 기회도 갖지 못함.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알린다는 것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Ⅲ.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1. 2차 피해의 영향

가. 피해자의 고통

- 1차 피해보다 피해가 가중되며, 심리적 상처도 가중됨.
- 타인, 나아가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중략) 성희롱은 전형적인 외상의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은 심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희롱을 고발하는 과정과 뒤따르는 법적 절차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¹¹⁾

나. 기관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구성원 간 불신 팽배, 기관 및 조직 이미지 하락, 기관 및 조직 내 여성혐오/배제 현상.

다. 고충처리담당자의 어려움¹²⁾

- 전문인력 부족 : 양성평등 사건조사 업무와 상담 업무 성격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 담당자가 두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겪는 시행착오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음.
- 과중한 업무량 : 업무량의 과중함으로 인한 소진의 심각성 호소함. 행정업무/성희롱고충상담/사건처리 등을 1~2명의 인원이 도맡아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학내 의식이 진전되면서 사건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 인력 규모는 변화가 없어 담당자 업무 가중으로 이어짐.
- 열악한 담당자 처우 : 불안정한 지위에서 과중한 업무량과 노동 강도에 시달림.
- 피해 학생의 강한 징계 요구 : 고충상담기구에 사건을 신고하는 피해 학생 중 가해자에 대해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함. 학내 규정상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징계의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학교의 징계수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 학생이 형사고발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피해자 중심주의¹³⁾

(1) 용어의 등장

- 2000년 운동권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는 과정(100인 위원회의 활동)에서 만연했던 '가해자 중심주의'에 대응하며 사용된, 맥락적 지식의 결과물.
- 성폭력 성립여부(이것이 성폭력인가?)와 경중(얼마나 '심각한' 성폭력인가?)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 하며 피해자의 경험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피해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피해 경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신뢰하고 경청한다는 의미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는 강하지 않았음.

11) Jon G. Allen,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김정범·조용래·최혜경·최윤경·권호인 공역, 학지사, 2010, 33-34쪽

12) 이미정, 윤덕경, 정지연, 김정혜, 정수연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 교육부, 정책보고서에서 참조

13) 권김현영 (2017),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발제문(2107, 5, 15)에서 참조

- 초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위해 도입한 개념들이 100인위 활동 이후 개별 사건들이 각기 진행 되는 과정을 통해 '운동'에서 '절차'의 언어로 이동함.

(2) 개념의 변용

- '피해자 중심주의'/'2차 가해'와 같은 개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맥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교조적으로 일종의 '지침'과 같이 매뉴얼화 되어 사용됨.

-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즘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합리적 여성'부터 '피해자 관점' 등은 충분히 정당화되지 못하고, '피해자 중심주의'같은 이름의 새로운 도덕주의로 규범화됨.

(3) 결과

-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지나치게 독점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용됨.

- 피해자에게 '권리의 형식을 띤 타자와 현상'이 발생함.

: 성폭력 사건 처리가 매뉴얼화 되는 과정에서 '시민 사회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구성원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오직 피해자만이 의무가 아닌 권리를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사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함.

(4)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

- 피해 경험에 대한 해석을 있는 그대로 믿자는 뜻이 아님.

-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거나 피해자를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태도야말로 피해자를 타자화 하는 일.

-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독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피해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임.

- 피해자는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님.

(5)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자 관점'으로

-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조력자에게 필요한 것.

- 사건 해석과 가해자 징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피해자 관점'.

- 피해자는 당연히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지만, 그 경험을 공론의 영역으로 가져올 때는 정당화의 의무를 지게 됨.

- 용서와 합의 역시 피해자의 선택임을 인지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다.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주는 말은 자제하기.
-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태도, 능력, 성격 등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기.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내지 않기.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 하지 않기.
-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하기.
- 가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기.

라. 성희롱 고충상담기관

-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 내 여론과 관련인을 모니터링하기.
- 사건조사에 협력한 조력자들에 대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기.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 행위자와 공간분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조치하기.
- 가해행위자에게 후속조치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하며 이때 2차 가해행위 금지와 가중 처벌에 대해 고지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전 교원 및 전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기.

3.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국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규정 및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2차 피해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나. 대학/고충상담기관의 역할

1)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전담기구의 전문성 제고

- 실질적 활동을 위한 적절한 권한과 인적·물리적 자원 확보 필요하고, 각 기관에서 기구의 확장예안 및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더불어 관련법령 정비와 예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전담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상 지위, 순환보직, 업무단절, 책임은 있으나 권한이 없는 상황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의 안정화 및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상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됨.
- 업무 간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 사건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 업무 병행에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한 사람이 모두 전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제안 : 대학의 규모를 반영한 최소 전문상담인력 인원수 요건, 전문상담인력의 자격규정 정비 및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전임상담원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겸임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함.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의 최소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함.

2. 2차 피해 예방과 대응방식¹⁴⁾

가. 피해자

-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를 대학에 요청,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기.
- 가해행위자를 직접 만나 해결하기보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전달하기.

나. 가해행위자

-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규정에 따라 2차 피해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적으로 찾아가기 보다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추천함.

14) 윤덕경, 이미정, 최윤정, 장희영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췌함

2) 2차 피해 관련 대학/고충상담기관의 제도 보완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행위자 조치 기준을 명시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당사자 지원책,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3) 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 예방교육 내용에 2차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특히, 대학 내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필요한 주체는 교직원 등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이들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음. 또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지도교수 등의 위치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이러한 주요 결정권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교육부(2016).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2018). 도대체 법 제도는 어디에?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 2차 자료집

김영희, 김진희, 노경민, 심현정(2017). 키워드로 만나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가이드.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2015). 대학 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포럼 자료집

윤덕경, 이미정, 최윤정, 장희영(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미정, 장미혜, 정수연, 허은영(2015).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윤덕경, 정지연, 김정혜, 정수연(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정현미, 장명선, 한지영, 이희진, 이영희, 박윤진, 김명숙(201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과정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과정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2017).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2015).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Jon G. Allen(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김정범·조용래·최혜경·최윤경·권호인 공역, 학지사

사건의 2차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김 예 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02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에 비해 도드라지는 특성 두 가지를 최대한 강연에 녹여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따라서 첫째, 여전히 학생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이자 성인권 침해 사건 처리 활동가라는 경험. 이 두 가지를 담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얻어 가기 위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본 강연은 완전히 학생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생각이 다르거나 의문이 드는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부문에서 시각차가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간극을 메꿀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적극적으로 강연을 들으신다면, 이 한 시간이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 차

1. 카카오톡방 성희롱 사건 공론화
2. 카카오톡방 성희롱 사건(공론화 이후)
3. 일반론

주제는 제 경험에 기반한 학내 성 인권 침해사건에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강연 진행방식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맞닥뜨린 역경과 그때마다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 하고 싶던 속내를 털어놓는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 카카오톡방 성희롱 사건 공론화(사건 발생~ 대자보 작성)

사진은 제가 2017년 겨울쯤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란 프로그램에 청년연사로 강연하던 방송의 장면입니다. 본 강연을 하게 된 계기가 제 대학생활을 통째로 바꾼 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출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해자 대책 위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사건 처리를 담당해야 했던 실무자란 뜻이지요.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위의 카톡(PPT사진 참조)이 1년간 7명 사이에서 이뤄졌고, 그 양은 A4로 천 쪽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렇게 성희롱 한 대상은 저를 포함해서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내용도 상당했습니다.

가해자 7명은 모두 제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의남매'라고 할 정도로 대학 내내 붙어 다닌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독에 속해있던 공익제보자 덕에 공론화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친구가 제게 그 단독을 알려주면서 그들만의 음지에 있던 단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내부/고발자'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 보단, '공익/제보자'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역설적인 말이지만, 피해자가 많다는 것은 꽤 다행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작은 분노와 용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성폭력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제를 단 대자보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카카오톡방 성희롱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1-1. 어려움과 제언

사건 전개에서부터 공론화에 이르는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무지였습니다. A부터 Z까지 단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매일 이런 케이스를 다루는 여러분이라면 '아니 이것도 모른다'고? 싶은 것까지도요. 애들이 처벌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면서 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공론화를 하는 게 징계과정에서 도움은 되는 건지, 학생회에 먼저 알릴지 성평등센터에 먼저 알릴지, 순서는 별로 상관 없는 지 등등.

그 중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되게 만든 것은 무지에 따른 **맞고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특수하게도 기록이 다 남는 온라인 카톡 사건이어서 무고로 몰릴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하는 사건 경위서를 작성할 때 어디까지 공개하고 인물을 특정할지 무척 고민했고, 학생회에서 징계에 사과문을 포함시킬 때, 혹시 몰라서 본 사과문은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했고, 사과문의 내용도 일절 검토하지 않았어요.

이는 피해자만이 마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사회 내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절차 또한 학생끼리 하는 과정이므로, 공론화가 크게 되면 될수록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혹시 자신도 묶여서 후에 곤란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사실 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살면서 이런 사건을 처음 겪거나 혹은 처음 처리하는 학생신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제언**은,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길 바라요. 예를 들어, 많은 학교의 성평등 센터 홈페이지에는 사건 처리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 되어있는데, 거기에 살을 덧붙이는 거죠. 매뉴얼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쉽게 대답해줄 수 있는 질문을 떠올리고 설명해주는 거죠. 위축된 상태에선 이런 정보가 불안을 떨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Ex. 상담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양식이 있는지, 상담 시 혹시 누군가와 동행해도 괜찮을 지, 신고를 하면 혹시 담당 교수님 등 누가 알게 되지는 않는지, 혹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실무자들이 들으면 너무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것들을 찬찬히 떠올려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덧붙여서, 제 사건처럼 공론화를 할 경우라면 **법률자문**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민변이나 로스쿨 내 동아리처럼 지식 재능 기부의 플랫폼, 루트를 소개해주셔도 좋지만, 최소한 **법률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매우 유용할 거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니까 이성을 잃기 쉽잖아요. SNS 공개 저격,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서 썼던 사과문 내용, 가해자의 연락에 ㅎㅎ이나 ^^를 붙여서 추후에 불리해지는 등 조심해야 할 흔한 유형을 귀뜸해주시면 사건 신고로 입을 사법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카카오톡방 성희롱 사건(공론화 이후)_ 2차 피해에 초점 맞춰서

제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반응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크게 학내 구성원의 반응/ 외부기관(경찰, 언론)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던 반응은 '헐기 왕성한 남학생들끼리 한 농담가지고 왜 그러냐'는 말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변명에 '맞아, 그럴 수도 있지'하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학내 반응

대학은 다른 조직에 비해 훨씬 친밀한 신뢰관계를 활발하게 맺고, 그 관계는 개인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 형성되는 공동체 중에선 대학만큼 그 관계가 친밀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을 찾아보기 힘들니다. 또한 직장인, 학생, 동료, 선후배, 선생님, 제자, 상사, 신입 등 매우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고, 서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교내에 알린다면,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지지나 비난을 받게 됨을 감내해야 합니다. 덧붙여 공간분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캠퍼스 특성상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까지도 말이지요.

따라서 제가 겪었던 반응들은 가해자 편을 들거나, 혹은 그래도 이건 과하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종류였습니다. 마지막 종류의 예를 들면, '와 재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고 자기가 피해를 겪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지? 진짜 피해자답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약하게 울고 있을 거란 고정관념이 투영된 말이지요.

솔직히 2차 피해를 대학 실무자 입장에서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글은 형체가 없고, 또 요즘에는 예브리타임이나 SNS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뤄지니까, 이를 어떻게 다 구분 짓고, 제재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피해는 근본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에 바탕을 두어야 한단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가해자에겐 힘을 실어주고, 피해자에겐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 A는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학교 특성상 피,가해자의 친구들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B가 소속된 건 아니지만, 같은 학과 산하에 있는 학회 뒤풀이에 가해자 친구들이 A를 불렀어요. 왜냐면, B는 여기에 없고, 이 뒤풀이는 OT라거나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같은 "진짜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이 친구를 부르는 걸 현실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지만, '가해자를 뒤풀이에 부르는' 가벼운 선택들이 교내 성 인권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자각시키는 교육 콘텐츠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실질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학내 커뮤니티와 예브리타임처럼 가장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곤 합니다. 저 또한, 페이스북이랑 기사 댓글 등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따라서 커뮤니티 관리자와 연락을 통해서 어떤 공지에 당부하는 글을 적는다거나, 댓글 달기 전에 자동으로 뜨는 문구 내용을 악플, 헛소문 등을 자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마저도 안된다면 주기적으로 혹은 화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글을 쓰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성평등센터가 게시글을 쓰고 추천을 많이 받는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냥 악플이 어떤 식으로 달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주최할 성평등 행사들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바빠서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없다면, 교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성평등 서포터즈 같은 단체에 미션을 줄 수도 있겠지요?

- 외부 기관

이제는 언론 기사가 나가고, 경찰 수사 단계를 밟는 등의 사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사화를 원하시는 실무진들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뭐든지 해야겠다 생각도 있고, 혹은 너무 알려져서 피해자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기자, 신상 유출의 걱정,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보도가 되는 상황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처는 외부에서 주는 거지만, 학내 실무진에게도 할 일은 있습니다.

기사화가 되었다고 혹시나 피해자에게 불쾌한 티를 내거나, 더 이상의 언론 보도를 자제하는 말은 최소화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할 순 있지만, 학내 단체와 피해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학내 분위기에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이라 가끔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혹은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말을 잘못 옮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차분하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끔은 과할만큼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3. 일반론

마지막으로는 학내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뽑아본 것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학생 활동가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방법

형태는 달라도 모든 대학에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학생회든 여학생위원회든 혹은 개인의 모임이든지요.

그런 단체의 오래된 고민은, 계속해서 사건 처리를 도와주는 자신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몇몇은 외부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상담 자격증을 취득해오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적은 특이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사건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을 키울 만한 체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대학 실무자들이 제공해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이런 세미나나 강연을 제공하여서 계속 구성원이 바뀌는 단체여도 그 단체 자체의 최소한의 역량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정보 및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게 되는 것 외에도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② 대리인 역할에 대한 고민

간혹 피해자대리인으로 학생회 대표를 내세우거나, 여학생위원회 활동가를 내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다 경험이 많으리라 생각하니까요. 따라서 피해자들은 사건 징계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해지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대리인은 피해자보다 모르면 몰랐지 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건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지 여부 정도는 대리인에게도 통보를 해주고, 또 그 중간 중간에는 피해자대리인에게 피해자가 상당수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이 도와준 사람도 있긴 했지만, 결국 심리적으로 추스르는 것을 잠시 미루고 사건 처리를 위한 단계를 계속 밟아야 하는 것이 피해자대책위의 역할이었습니다. 뭔가 가서 대리로 누군가 말을 듣고 와주고, 전달해줄 수 있었다면 하는 것이 당시 제가 가장 바랐던 몇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논쟁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지만, 이 자리를 빌어 한 번쯤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만 꼽아 요약하자면, 실무를 오래 다룬 입장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처음이고 어려운 학생의 시각에서 지금 다루고 계신 사건을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열심히 학생사회에서 해결하고자 애쓰는 교내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외의 부분에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김예은이었습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자료

2020년 2월 발행

발행 :  교육부

편집 :  (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인쇄 : 닷봄기획 (02-2269-8030)